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67-14



GERMANY

2012

독 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67-14



GERMANY

2012

독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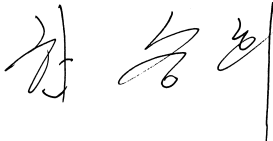
머 리 말

독일은 유럽지역 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며, 한-EU FTA를 기점으로 양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과세당국은 조세 감면 규정 등 외국기업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일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독일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Contents

제1장 독일 국가 개황	1
1. 국가 개요	3
2. 정치·경제 동향	3
3. 주요 산업 동향	8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4
제2-1장 독일의 조세제도(국제조세·이전가격)	21
1. 독일의 국제조세	23
2. 외국법인·외국인의 독일 내 소득에 대한 과세	24
3. 국내거주자·국내법인의 외국획득소득에 대한 과세	28
4.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29
5. 이중과세 방지제도	36
6. 조세회피 방지제도	40
7. 독일이 맺은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41
제2-2장 독일의 조세제도(소득세·법인세)	47
1. 독일 세제 개요	49
2. 소득세 개요	52
3. 소득의 유형과 소득세 과세체계	53
4. 주요 계정별 소득·비용 계산 규정	58



5. 소득세 기타사항	63
6. 법인세 개요	64
7. 법인세 과세소득	66
8. 법인세 기타사항	70
제2-3장 독일의 조세제도(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73
1. 부가가치세(Umsatzsteuer)	75
2. 영업세(Gewerbsteuer)	83
3. 세무조사(Gewerbsteuer)	87
제3장 독일의 투자환경	91
1. 독일 투자환경	93
2. 독일 투자입지 여건	99
3. 진출형태별 절차	109
4. 독일의 주요투자법	122
제4장 독일 진출의 애로사항	127
1. 독일 진출시 애로사항	129
2. 독일의 상관습과 거래시 유의사항	132
3. 첫 진출시 각종 신고절차	136
4. 독일 유관기관 웹사이트	140



제1장 독일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2. 정치·경제 동향
3. 주요 산업 동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국가 개요

- ◆ 위치 : 서유럽
- ◆ 수도 : 베를린(Berlin, 346만명)
- ◆ 인구('12년초) : 8,180만명(외국인 693만 명)
- ◆ 면적 : 357,112km²(대한민국의 3.6배)
- ◆ 종교 : 가톨릭(30.5%), 개신교(26.3%)
- ◆ 언어 : 독일어
- ◆ 기후 : 온대성, 연간 섭씨 -1.3~17.8도

-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 대통령 Joachim Gauck
 - 취임일: 2012.3.23 임기: 5년
- ◆ 수상 Angela Merkel
 - 취임일: 2005.11.22, 재선: 2009.10.28

- ◆ 통화단위 : 유로(Euro)
- ◆ 환율 : 1유로 = 1,403.22원(2012.7.12)
- ◆ GDP('11, 명목) : 25,708억 유로
- ◆ 1인당 GDP() : 37,936 유로
- ◆ 실업률 7.7%('10년), 6.6%('11년)



- ◆ 교역규모('11)
 - 수출: 10,601억 유로(+10.5%)
 - 수입: 9,020억 유로(+11.9%)
-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항공기
- ◆ 주요 수입품
 - 석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2 정치 · 경제 동향

□ 집권 여당

- '09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메르켈 총리는 재정적자 감소, 경제 활성화와 실업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보장 제도, 조세, 연금, 의료보험, 연방제 개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개혁정책을 성공리에 추진

- 정부 여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은 기독교주의적인 관점 하에, 보수적이며, 중도우파적인 정치성향
 - 개인의 가치 및 친기업적인 환경을 강조하고,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는 강력한 유립을 지지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 구체적인 연정의 방향은 금융 위기극복, 조세인하, 관료주의 축소, 교육과 연구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최근 정치 동향

- '12.3월 연방대통령 선거로 가우크 대통령 취임(2012.3.23(금))
 - '12년 2월 부패 추문으로 자진 사임한 볼프(Christian Wulff) 연방대통령을 이어 차기 대통령으로 무소속 구동독 인권운동가인 가우크(joachim Gauckf)가 추대
- 연방하원선거(독일 총선): 2009.9.27(일) 메르켈 총리 연임
- 주의회 선거
 - Baden-Wuerttemberg주('11.3.27) : 여당 패배, 녹색당 두각
 - Mecklenburg-Vorpommern주('11.9.4) : 여당 패배, 사민당 승리, 녹색당 두각
 - Saarland주('12.3.25) :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연정, 해적당 의회 진출
- 원전 폐기 계획 결정 후,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추진 중
 - '11.6.30. 독일 연방의회는 '22년까지 가동 중인 17개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독일 원전 폐기안 공식 승인
 - '11.6.6.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계획 발표 ⇨ 전력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초석 마련

- 한편, 원전 사용 중지로 인한 부족한 전력공급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이를 대체할 태양열 및 풍력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완전한 대체는 2050년에 가능할 전망, 전력이 시급한 산업분야는 부족한 전력을 석탄에너지 의존해야 하나, CO2 발생으로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함에 따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계의 불만 고조

○ 유로존 재무장관, 유로존 구제기금 통합 운영 및 증액 합의

- 지난 3.30일(금)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결과, 유럽 재정안정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통합 운영하고, 기금 한도를 종전 5000억 유로에서 7000억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
- 총 구제금융 규모는 유로존 회원국의 양자대출에 의한 추가 출연금과 EU 지원금을 합한 1000억 유로를 포함해 8000억 유로 규모에 달함
- 시장 불안이 단기적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기금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고, 구조적 요인과 국별 불안 요인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에는 상당기간 소요 우려 잔존
- 또한, EFSF 증액 시 독일의 총 보증규모는 이제까지의 EFSF에서 보증 의무 2110억 유로 중, 잔여분 900억 유로와, ESM 자본의 독일 지분 220억 유로 및 독일의 ESM 신규 보증 규모 1680억 유로를 합한 총 2800억 유로로 증가 예상, 이는 거의 '12년 독일연방정부 예산에 맞먹은 규모
- 독일연방정부는 현재 모든 유로존 회원국에서의 재정위기 제동장치 도입과 함께 EFSF와 ESM의 보증 규모 확대가 현 유럽재정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화벽 구축의 최후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

○ 독일의 대외 정책 기조

- 유럽통합과 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양안 협력 체제의 강화
- UN·ECD 등 국제기구의 위상제고 추진

- 인권존중 정신에 따라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역할 구축 및 문화이해 도모
- 러시아, 동유럽 국가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
- 세계 정치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 * 통일 이후 대외 정책상 제약 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독일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어 경제에 이어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 국가로 부상했고 유럽 통합 추진과 對동유럽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 수행
 - *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대서양 협조체제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개혁 촉구, 구동구권 군소 국가들과의 긴밀한 접촉 및 적절한 지원 등에 힘쓰는 동·서 양면 정책을 취함
 - * 독일은 중동지역 국가들의 EU·EU·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여 중·동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편

□ 최근 경제동향

-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내수회복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06~'07년 호황을 누렸으나 '08년 하반기 이후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음
-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급격한 해외 수주 감소로 이어졌고, 유로화 환율 상승,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요인으로 '09년 4.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 '1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기 시작되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1% 성장, 특히 해외 수주 증가로 인한 수출 증가와 투자 호조로 '10년 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9,595억 유로를 기록

-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재정위기도 불구하고 주요 기간 산업에서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영업 호조와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전망 수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냄
- 다만, 유럽재정위기 해법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 평가사가 유로존 국가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강등하는 등 재정위기 해결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되고 있어, '12년 독일 경제 성장 역시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동향

- 세계 수출강국인 독일은 지난 '05년~'08년까지 4년 연속 세계 수출 1위를 고수하였으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09년 중국에 이어 세계 수출 2위, '10년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
- 현재 유럽 PIIGS 국가의 재정위기가 EU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독일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기둔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11년 11월까지 집계된 독일 수출입은 예상외의 호황세
- 독일의 주요 교역국은 EU 국가로 '10년의 경우, 수출의 60.3%, 수입의 56.6%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졌고
- EU 역외 국가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교역이 매우 활발하고 최근에는 인도를 비롯한 BRIC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10년 對 중국수입이 전년 대비 34.9%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위를 차지

□ 고용 시장

- '10년 독일 내 실업률은 7.7%를 기록하였으며, '10년 말 기준 독일 내 실업자 수는 약 302만 명으로 집계, 이는 '09년 말의 실업자 342만 명, 실업률 8.2% 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
 - 독일 고용시장이 지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한 기업 단축 근무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에 따른 것으로 평가
- '11년 12월 기준 독일 실업률은 6.6%로 지속되는 경기 악화 우려에도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이고 있고 '12년 3월 기준 독일 실업자는 302만 명이며, 총 고용자수는 4,109만 명을 기록

□ 물가 상승률

- 독일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불가 상승세를 보였던 '08년과 마찬가지로 독일 소비자물가는 지난 '10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 '11년 1월 2.0%, 2월 2.1%에서 출발하여 '11년 6월 2.3%, 7월 2.4%, 8월 2.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12년 2월 물가 상승률은 2.3%)

3

주요 산업 동향

□ 자동차 산업

-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08년 글로벌 위기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

했던 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로 국내 판매 시장이 예상 외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폐차보조금 지급 종료 후,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10년의 경우 총 292만대의 승용차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전년 대비 23.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0년 12월 독일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23만 400대로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기록
- 또한 해외 수주 증가에 힘입어 '10년 독일 완성차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9.7% 상승한 2,487억 3,300만 유로를 기록
- '10년 자동차 업계의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70만 8,970명을 기록

○ 독일 자동차업계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해외 부문의 호조가 독일 완성차 기업의 생산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

- '10년 독일 승용차 생산에서는 최초로 해외 생산(약 609만대)이 국내 생산(약 552만대)을 뛰어넘음

○ 독일 자동차청(KBA)에 따르면, '11년 독일 자동차 신규 등록 차량 수는 317만 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11년 12월 독일 자동차 시장은 유럽재정위기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신규 등록 차량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증가한 23만 4,501대로 집계

- 이는 독일 자동차 해외수출시장이 여전히 견재한 가운데, 독일 기업이 선전하고 있고, 또한 영업용 자동차 시장의 호황으로, 특히 디젤차의 판매대수가 총 70만대로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가 산업 경기에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12년 자동차 시장 전망은 어려운 상황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 비스만은 '12년에도 '11년과 유사한 생산 및 수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전문가 두덴회퍼는 '12년 자동차 판매가 '11년 대비 5% 감소한 총 1,210만대로, 제조사들의 가격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 BMW 회장 라이트호퍼는 적어도 '15년까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오펔 회장 슈트라케 역시 '12년 판매 둔화를 전망
- '12년 2월 누계 독일 자동차 시장의 신규 자동차 등록 수는 총 22만 4,318대로 전년 대비 0.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12년 경영난으로 해외 다수의 공장을 닫아야 하는 Opel의 부진도 독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로 2012와 런던 올림픽을 겨냥한 업체들의 광고와 파격적인 판매 서비스 등으로 완성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
- 한편,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모델 개발을 위한 완성차 업체 간의 경쟁은 '1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독일 자동차 기업은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이 한창
 - 또한, 수소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발도 매우 활발하여 빠르면 '12년부터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나 높은 자동차 가격과 노력에도 충전이 오래 걸리고 겨울철에 배터리가 여름보다 더 빨리 소모되는 단점이 있음

□ 기계 산업

- '09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10년 총 1,740억 유로의 매출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함

- 독일 기계 산업은 지난 '10년 하반기 약 5개월 동안(7~11월) 약 1만 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을 창출해, 총 고용인원은 91만 2,000명에 이룸
-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로 중국 등으로부터의 해외 수주 증가로 생산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1년 7월 독일 기계 산업은 전년보다 높은 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1년 2/4분기 독일 기계산업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2% 성장
 - '11년 하반기 유럽재정위기 확대 우려에 따라 수주량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우려와는 달리, 지속적인 수주 증가에 힘입어 선전(특히 공구제품의 경우, 약 1/3 가량 생산이 증가)
- 희귀 광물의 채취를 위한 기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위한 기계 설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기, 전자, IT

- 독일의 전자/전기산업의 경우, '09년 2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0년 경기 호조세와 함께 생산 부문에서는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매출에서도 13% 증가한 1,640억 유로를 기록
 -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결과로, 특히 에너지 관련 기술 부문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독일 전자전기중앙산업협회(ZVEI)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9월 말 '11년 독일 전자전기 산업 생산전망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12년에도 5%의 성장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함
 -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09년 4.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 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

- '12년 하노버에서 열린 Cebit 박람회를 통해 연방 정보기술 미디어협회 (BITKOM)는 작년의 상승세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11년 960만 대의 평면 TV를 판매했던 독일은 작년의 성장세에 힘입어 약 3.4% 성장한 1,000만대 판매가 예상되나 평균 가격이 약 4% 정도 하락하여,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작년(59억 유로)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주요 품목은 HDTV, Blueray, 3D Sourround로 '11년 전년 대비 13% 성장한 3억 유로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와 더불어 '10년 전기 전자 산업 분야 종사자는 84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2천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성장은 '11년에도 계속되어 동 산업 분야 총 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10,000명 증가한 85만 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화학 산업

- 독일의 화학산업은 금융위기 발발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09.3분기 이후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10년 총 17.5% '11년 9% 성장('11년 총 매출 1,865억 유로)
 - 독일의 화학업계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며, 여기에는 화학 제품에 대한 해외수주 증가가 매출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또한 '10년 총 41만 4,200명의 고용인원을 기록한 화학 업계는 전년 대비 0.5%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으나, '11년 고용 인원은 경기 성장과 함께 전년 대비 2% 증가한 6,2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
 - 총 고용 인원은 423,000명으로 독일에서 3번째

- '12년의 경우,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여파로 성장이 소폭 둔화되어 시장 성장률 1%, 매출 증가율은 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제재로 인하여 석유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석유 가격도 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 독일 내 산업 수요는 적은 편임에도 안정적이며, 특히 의약품과 같은 다른 화학 분야의 성장세와 현재 고객사의 재고량을 고려해 볼 때, '12년 침체가 그다지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

□ 철강 산업

- 총 5,000개의 기업과 40만 명의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철강업체는 지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09년 생산 부문에서 2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고전했으나, '10년 1분기 이후 높은 수주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진입
- '11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상반기 생산 용량은 83%까지 증가해 최고 생산량을 자랑했던 '07년의 84.8%에 거의 근접
 - 이러한 상승세의 주요인은 해외 시장에서의 독일 철강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독일 자동차·기계산업의 호황
- '11년 독일 철강 중소기업은 현재 글로벌 경쟁기업 대비 비교적 높은 전력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인력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철강 업계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 요인이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 독일 철강경제연합(WSM)은 독일 철강 기업이 '11년도 12%에 이르는 높은 생산 증가에 비해 성장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2년에도 3~4%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생산 제품의 70%는 직·간접적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성장은 유럽의 다른 시장, 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요가 관건

○ 또한, 철강 업계는 '11년 총 17,8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계속된 성장으로 '12년에도 2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어 독일 철강업계에 종사자의 수는 총 4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개요

○ 주요 체결 협정

- 1883.11.26 통상·우호·항해 조약 체결
- 2002.10.31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개정)
- 2005.01.01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 교역규모

- 2010년 : 수출 107억 달러, 수입 143억 달러
- 2011년 : 수출 95억 달러, 수입 170억 달러

○ 교역 품목

- 주요 수출 품목 : 선박, 선박부품,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컴퓨터, 금속공작기계, 합성수지, 디스플레이

- 주요 수입 품목 : 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기계요소,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기타기계류

○ 총 교민 수 31,518 명('11년 7월 기준)

□ 외교 관계

- 한국과 독일 양국은 민족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독일은 한국의 경제 성장기 물심 양면으로 지원한 바 있음
- 숙원 과제인 통일을 이룬 독일은 현재 우리 평화 통일정책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으며,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시 서방측의 공동 제안국, 핵심 우방국으로 활약
- '97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지원 등 한-독 양국 관계는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정부의 對 아시아 중시 외교 정책에 따라 한-독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관계는 점차 강화
 - 독일 정부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국제 기구 및 국제 사회에서 든든한 우방국으로써 자리 매김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부품소재산업 분야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활발히 전개

□ 수출입 동향

- 독일은 유럽 국가 중 한국의 1위의 수출국이자 수입국
 - '10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107억 달러(+21.3%), 수입은 143억 달러(+16.3%)로 전년의 감소세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상승

- '11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95억 100만 달러(-11.2%), 수입은 169억 6,300만 달러(18.6%)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적자 무역이 크게 확대

○ 한-EU FTA를 기점으로 양국간의 무역 거래 규모는 최고조에 이르렀던 '07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 시장 위축으로 선박 등의 수주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 시장의 포화 현상과 수출 둔화 현상이 겹치면서 일부 성장 품목의 수출 증가세를 상쇄

○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

- '11년 기준 한국의 對 독일 5대 수출품목은 선박·선박부품,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3,584	6.7	4,359	21.6	2,720	-37.6
2	자동차	547	-38.1	547	0.1	1,118	104.4
3	반도체	1090	-7.5	1,407	29	830	-41
4	무선통신기기	676	-30.1	495	-26.7	491	-0.8
5	자동차부품	223	13.3	445	99.7	399	-10.5
6	계측제어분석기	33	-4.0	47	43.1	234	393.1
7	컴퓨터	496	-27.1	431	-13.1	200	-53.6
8	합성수지	82	-15.8	130	58.2	196	50.5
9	금속공작기계	70	-65.8	62	-11.1	192	209.4
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3	-20.9	403	108.6	179	-55.7

* 자료: Kotis('12년 4월 기준)

- '11년 한국의 對 독일 5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계측제어 분석기, 원동기, 펌프로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임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명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1,398	-14.4	1,852	32.5	2,589	39.8
2	자동차부품	635	-24.3	800	26.0	944	18
3	계측제어분석기	541	-19.3	676	24.9	844	24.9
4	원동기 및 펌프	631	-8.2	717	13.5	836	16.7
5	기계요소	540	-28.3	640	18.6	717	12
6	반도체	542	-27.0	704	30.0	675	-4.1
7	정밀화학원료	296	-16.9	480	62.0	670	39.6
8	농약 및 의약품	463	-6.3	566	22.1	584	3.2
9	기타기계류	476	-15.9	453	-4.9	472	4.1
10	섬유 및 화학기계	219	-8.3	287	31.3	444	54.5

* 자료: Kotis('12년 4월 기준)

□ '12년 이후 수출입 전망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독일 역시 유럽 국가 중에서 빠른 경기 회복세로 유럽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11년 하반기 이후 유럽재정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기 둔화세가 예견되었으나, '11년 독일은 예상을 웃도는 3.0%의 성장을 기록하여 위기에도 독일 경제 성장은 탄탄한 호조세를 유지

- '12년 독일 경제는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있으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수요 둔화요인에 따라 수출 성장 감소 우려로 기존의 1.0%보다 소폭 하향된 0.7%의 성장이 기대
- 양국 교역은 한-EU FTA를 토대로 일부 품목에서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 특수적인 조건에 따라 급락세를 보이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속적으로 독일 및 유럽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일부 시장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높은 관세로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4.5%), 석유화학제품(6.5~8%), 의류/섬유류(8~10%) 등에서의 관세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섬유, 합성수지, 금속공작기계, 계측제어 분석기, 건전지 및 축전지 등은 FTA 발효에 따라 관세 철폐, 인지도 향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 전망
- 거래 기업과 장기간 계약관계를 선호하는 독일 업체들이 FTA 협약을 계기로 단시일 내에 거래선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FTA 효과가 가시화 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또한, 한-EU FTA 협정 발효로 인한 관세 혜택 절차를 독일의 모든 세관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으며, 품목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업체들이 여전히 있음
 - 한·EU 양측은 양국 교역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 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EU 통관 시점부터 2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 시)

□ 경제 통상 관련 이슈

- '09년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에서 한국은 동반국가로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
 - 이를 통해 한국은 자국의 과학기술을 널리 소개할 수 있었고, 한·독 총리회담과 경제장관 회담이 함께 열려 녹색협력 강화와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됨
 - 또한, 투자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기업과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
 - 무엇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독 워킹 홀리데이 공동 성명”이 발표되어 18~30세의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양국의 청년들이 상대 국가에서 최대 1년간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하게 됨

- '09. 8월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온라인 게임박람회(Games Convention Online)에 주빈국 참가했고 '10년에 이어 '11년 8월 쾰른 Gamescom 참가를 통해 온라인게임 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음

□ 문화 교류 관련 이슈

- '70.8.16 체결된 한-독 문화 협정에 근거하여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와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독 문화공동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75.3월 본에서 제1차 위원회가 개최
 - 제1차 회의 이래 매 2~3년마다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됐으며, '04.9월 제9차 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
 - 한-독 양국은 제9차 한-독 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되고, '05년 베를린 아-태주간 행사에서

포커스 국가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 및 경제 행사를 개최

- '09.4월 개최된 하노버 박람회와 연계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대규모 문화 예술 행사가 마련되었고 한국의 현대 미술과 사진, 디자인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영화제·도서전시회 등이 하노버 곳곳에서 개최
- 또한, 한국 영화가 유럽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04년을 기점으로 독일 상영관 진출이 매우 활발해짐
 -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마리아>, <섬>, <빈집>, 이광호 감독의 <천년호> 등과 함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와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봉준호 감독의 <괴물>,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 또한 최근 임상수 감독의 <하녀> 등 다수로 주로 국제 영화제를 통해 알려진 감독과 배우들의 작품들이 소개
 - '1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파란만장>이 단편 경쟁부문에서 황금곰상을, 양효주 감독의 <부서진 밤>이 은곰상을 수상

□ 산업 기술 교류 관련 이슈

- 양국 정부간의 산업기술 교류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년 4월 제4차 한독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개최
 - 산업클러스터간 협력이라는 대주제 하에 독일 Bonn 등에서 4.11~4.15 일간에 걸쳐 한독 의료기술워크샵, 아헨클러스터 방문, Fraunhofer FIT 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
 - 지경부와 교과부로 구성된 한국 사절단이 독일을 방문을 통하여 양국간 산업기술 교류의제에 대해서 활발한 협력사업 논의가 진행



제 2-1 장 독일의 조세제도

(국제조세 · 이전가격)

1. 독일의 국제조세
2. 외국인·외국법인의 독일 내 소득에 대한 과세
3. 국내거주자·국내법인의 외국획득소득에 대한 과세
4.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5. 이중과세 방지제도
6. 조세회피 방지제도
7. 독일이 맺은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1

독일의 국제조세

□ 국제조세법이란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과 연관이 있는 모든 조세 규범을 의미하며 외국과 연관을 가진다 함은 납세의무자나 과세물건이 여러 나라의 주권하에 있거나 여러 나라의 주권기관이 동일한 납세의무자나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권을 발동하는 경우를 말함

□ 국제조세규범의 체계

- 국제조세규범 체계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외국 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국내 거주자나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방법으로서 독일에서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동시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국제간의 이중과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조정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기능을 조세조약과 함께 수행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국제조세 규범 중에서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국제간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조세조약과 대외조세법, 그리고 조세기본법과 그 기능을 같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를 은닉배당이라는 형태의 간주배당으로서 과세하는 형식으로 두고 있으며 대외조세법은 이전가격세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원칙을 상술하고 있음
- 조세기본법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제출 의무를 국내거래에 비하여 특히 강하게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벌칙규정도 두고 있음

- 대외조세법은 경과세국(Tax Heaven)과 관련한 과세규정과 거주지를 저세율 국가로 바꾸어 독일내 과세를 줄이려는 (구)거주자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외국법인 · 외국인의 독일 내 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평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의 전 세계소득(소득세법 제2조)에 대하여 독일 과세당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독일에 주소도 없으며 통상적으로 거주하지도 않는 자연인은 제한적 납세의무자이며 이에 따라 특정한 국내소득(소득세법 제49조)에 대하여만 독일 과세당국에 납세의무를 가짐
- 독일세법에 의하면 결국 내국인의 소득이나 내국의 소득이 과세대상임
 - 상속세법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상속증여세법 제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내국인이거나 상속자산이 국내에 위치한 경우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법은 제1조에서 국내에서 운행되거나 국내에서 출고가 허가되고 외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부동산세나 다른 간접세들은 이에 비하여 단지 국내과세 물건만으로 제한되며 납세의무자의 인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음
- 본원적인 국내세법이 과세권을 상당히 넓게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중 하나만 독일 내에 위치하면 과세되는 것임
- 독일 세법규범은 국제법과 일치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것임

□ 제한적 납세의무자의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9-50a조)

- 독일의 소득세법은 제8장(제49조, 제50조, 제50a조)에 제한적 납세의무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외국법인과 외국거주자)의 국내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에서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고 제50a조에서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의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두고 있음
- 고정사업장과 대리인에 대한 정의는 조세기본법에 있음(조세기본법 제12조 및 13조).
- 소득세법 제49조는 제1항 1-9호에서 제한적 납세의무자(외국법인과 외국거주자)의 국내과세소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국내의 농림업 소득
 - 국내의 사업소득(고정사업장 및 상시대리인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 등)
 - 국내에서 수행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 국내에서 수행된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
 - 국내소재 자산으로부터의 자산수익
 - 국내소재 자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1호의 의미의 기타소득(반복적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2호의 의미의 기타소득(개인의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4호의 의미의 기타소득(보상금 등)
 - 소득세법 제22조 3호의 의미의 기타소득(동산의 임대/중개 소득 등)
- 소득세법 제50조에서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는 회사의 경비나 개인의 필요경비로서 국내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손실공제도 국내소득과

연관이 있는 것에 한하여 그리고 국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은닉배당

- 법인세법 제8조는 은닉배당(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가 회사와 주주의 특수한 관계를 토대로 쌍방간의 합의를 통하여 실제관계를 은닉하고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이용되는 경우 적당한 규모의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에 산입시키며 동시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는 규정
- 법인세법의 이 규정은 국내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적용하므로 이전가격과세를 통한 소득 조정도 결과적으로 은닉배당으로 처분
 - 어떤 기업이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구입의 경우), 낮은(판매의 경우)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에 은닉배당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과세당국은 과세소득 감소분만큼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보았다고 간주하고 은닉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세무관청은 이러한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기업에게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과소자본세제(구 법인세법 제 8a조에 의한 은닉배당)

- 2008년 기업세제개혁법을 통하여 이자손금산입제한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는 2007년까지 적용되어오던 과소자본세제를 대체함.
- 법인세법 제8a조에서 규정하는 은닉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소자본세제라고도 알려진 제도로서 자본회사의 주주가 자본금을 필요규모 이하로 줄이고

사업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주주차입금을 통해 조달한다면 회사는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 회사가 지불하는 차입이자는 기업의 비용으로 회사의 소득으로부터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비하여 유리하나 이 경우 경제적 의미로 보면 차입금은 자기자본이며, 이자는 이익배당으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차입금을 은닉자본금이라 하며 이 경우에 지급이자는 법인세 납세 의무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는 은닉배당이 되는 것임

○ 기본원칙

- 독일 세무당국은 독일 소재 자본회사가 외국 소재 주주로부터 과도한 차입금을 제공받고 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를 은닉배당으로 간주하고 이를 독일에 있는 자회사에 과세
- 이제까지 독일 내 제한 납세의무자인 주주는 해외 주주차입이란 방법을 이용하여 독일 소재 현지 법인이 상기 주주에게 배당한 이익에 대해 반드시 한 번은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피하여 법인세 산정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의 혜택을 누려왔음
- 이러한 원칙 위배는 모회사가 출자를 통하여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행하듯 대부를 통한 타인자본의 유입방식으로 나타나며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는 경상비용으로 취급되어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법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되지 않았음

○ 적용범위

- 법인세법 8a조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
- 첫째, 법적 형태가 자본회사이어야 하며, 둘째, 타인금융 중 해외 거주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어야 함

3

국내거주자 · 국내법인의 외국획득소득에 대한 과세

- 독일의 소득세법 제34c조에서는 1항에서 독일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외국세액공제 제도 대신에 외국세액면세제도를 신청하면 이를 적용하다고 규정
- 독일 소득세법 제34c조는 외국에서 부과되고 납부되었으며 감면되지 않은 세액은 독일 국내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되도록 허용하고 있고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독일내 무제한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외국 납부세액이 독일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함
- 외국의 과세소득은 독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산정되며 이에 대한 독일의 외국세액공제에도 제한이 있으며, 제한된 범위를 넘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이월되지 않음
 - 공제의 한도 = 전 세계소득에 대한 독일의 소득세액 × (외국소득 - 과세되지 않는 외국소득) / 전 세계소득
- 독일 소득세법 제34d조에서는 독일 거주자의 해외소득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법인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인의 외국소득의 종류와도 인적용역 등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
- 소득세법 제2a조에서는 외국손실의 국내소득과의 상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내 거주자의 외국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 거주자의 같은 나라에서 발생한 같은 소득 종류에서의 소득과는 상계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소득과는 상계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
- 독일의 법인세법 제8b조 5항에서는 해외배당의 5%를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손비항목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대외조세법 제6조는 독일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거주자가 해외로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제한적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업지분의 매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사항을 규정

4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가. 이전가격세제 적용 여부

□ 정 의

-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해외에 있는 관련 당사자간의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에서 감소되었고 해당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비관련당사자간의 계약조건을 벗어난 조건에 납세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제3자간의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증가되어야 함
- 관련법규
 - 독일에서 정상가격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은 국제조세법(Außensteuergesetz) 제1조가 유일함
 - 국제조세법 제1조의 입법 의도는 비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계약에 있어서 국내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상향조정(upward adjustment)할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비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규정은 국제조세법 이외에도 법인세법(KöLrperschaftsteuergesetz)상 은폐배당(hidden profit distribution), 은폐출자(hidden capital distribution)¹⁾를 들 수 있는데, 법인세법상 규정이

1) 독일 세법에서 은폐배당과 은폐출자는 우리나라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먼저 적용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제조세법 규정이 적용됨

- 정상가격원칙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는 법인세법이 적용된 사건임
- ‘은폐배당’은 주주관계에 의한 회사의 자본 감소로서 회사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배당처분과 관련없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주나 주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함
- ‘은폐출자’는 회사가 주주나 주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자대상인 사업자산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러한 출자가 주주관계에 기한 것이고 적정한 가격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이전가격에 대한 소득조정과 이전가격 계산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국제조세법 행정규칙(Grundsätze zur Anwendung des Aussensteuergesetzes)과 이전가격 행정규칙(Grundsätze für die Prüfung der Einkunftsabgrenzung bei international verbundenen Unternehmen; Transfer Pricing Circular)이 있음

□ 적용대상자

- 법인세법상 은폐배당 및 은폐출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법적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개인 등이 모두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조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해당함
 - 따라서 비거주자의 독일 내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이 과소 보고된 경우 국제조세법에 따라 소득이 조정됨

- 거래당사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법인, 파트너십, 자영업자 등이 모두 가능

□ 특수관계자

-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특수관계자 요건은 이전가격의 근거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됨
 - 은폐배당(hidden profit distribution)이나 은폐출자(hidden capital distribution)가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 실무상 독일 세무당국은 독일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국제조세법상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국제조세법상의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이전가격 사건들이 은폐배당이나 은폐출자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거래당사자간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조세법상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실질적 참가)하거나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 지배권(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에 지배권(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거래당사자가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 대한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사업관계 이외의 사실관계에 근거해 거래당사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소득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 대상거래

- 독일의 이전가격세제는 주로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intra-Germany transaction)에도 적용되며, 회사의 ‘내부거래’(intracompany transaction)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내부거래’는 한 회사의 지점들 간의 거래 또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로서 이들 거래는 통상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지점들 한 회사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실체로 보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전가격에 대한 판례의 대부분은 국내거래에 대한 것인데, 법인과 지배주주의 거래 또는 지배주주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함
- 또한 국제조세법 규정은 거주자(또는 내국법인)와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 간의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²⁾에서 발생하는 거래만을 이전가격 대상으로 함
 - 따라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모두 독일 거주자이거나 쌍방 모두 독일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독일에서 이전가격원칙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출자, 처분, 리스 또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유형자산의 이전

2) A business relationship is any contractual arrangement other than arrangements governed by corporate law.(국제조세법 §1(4))

- 출자, 처분, 인가 또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특허, 상표, 공식(formulas), 노하우, 비밀보호(secret process),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
- 행정, 감독, 기술, 마케팅 또는 유사 서비스의 제공
- 팩토링, 헷징계약, 보증 또는 담보 방식의 재정지원과 같은 재무조정과 론(loan)
- 연구개발비 또는 서비스비용의 분담에 관한 원가배부협정
- 시장진출 및 유지에 관한 협정

□ 이전가격 적용 여부

- 독일의 이전가격세제는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에 모두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우리나라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유사)과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국제조세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의 대상이 되는 유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이 국제조세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와 동 법인의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해 국제거래인지 국내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됨
- 만일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와 동 법인의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은폐배당이나 은폐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 때 국제조세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대상거래가 국제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나. 이전가격조정과 대응조정

□ 일차조정

- OECD 모델조세협약에 따르면 일차조정(primary adjustments)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세무당국이 행하는 소득조정을 말함

- 일차조정은 국내법에 따라 행해지므로, 독일의 이전가격세제에서 일차 조정은 은폐배당, 은폐출자, 국제조세법 제1조에 근거한 조정을 의미함
- 위의 세 가지 종류(은폐배당, 은폐출자, 국제조세법 제1조의 이전가격)의 조정이 동시에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은폐배당이나 은폐출자에 대한 소득세 행정규칙에 따라 조정금액이 결정됨

○ 은폐배당 규정에 의한 일차조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짐

- 해외로 소득을 이전한 독일 회사에 대해서는 이전한 소득의 가치만큼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이 증가된 추가소득에 대해 25% 법인세, 지방 거래세(municipal trade tax), 법인세에 대한 5.5% 부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
- 이 때 이전한 소득의 가치만큼 은폐배당이 성립하게 되고, 은폐배당이 인정된 시점에 외국인 주주는 독일정부에 20%의 원천징수세와 원천징수세에 대한 5.5% 부가금을 부담해야 함
-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EU 지역 내에 존재하고 EU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주주는 환급받을 수 있음

○ 은폐출자의 경우, 특별장부(particular balance sheet entry)에 기입하여 독일 모회사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킴

- 증가된 금액은 자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면서 소득 조정에 반영되어 자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됨

○ 국제조세법에 의하여 일차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계정을 조정하지 않고 이익(profit)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함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에 따라 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은폐배당의 결과에 대해 은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매출채권 계정에 기입하여 해외로 이전한 소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국내회사의 과세소득이 상향조정(upward adjustment)된 부분에 대하여 외국인 주주는 독일에서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됨
- 특수관계자가 차액지급(balancing payment) 방식에 따라 일차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증가분과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감소분을 상계(offset)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상황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상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폐배당, 은폐출자, 이익추가부분은 다음과 같이 환원시키는 조정을 하여야 함
- 은폐배당으로 처분되었던 경우에는 ‘은폐출자’로 환원처리됨
 - 은폐출자로 처분되었던 경우에는 ‘자본의 환급’으로 환원처리됨
 - 국제조세법상 이전가격의 경우 이익이 추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외에서 제외함

□ 대응조정

- 상대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한 결과 발생한 이중과세는 상호합의에 따라 대응조정됨
- 상대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하게 되어 독일 세무당국이 하향조정(downward adjustment)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조치를 취함
 - 해외에서 조정한 금액을 독일회사가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입채무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독일회사가 모회사인가 자회사인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처리됨

- 독일 모회사가 이전가격조정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반환해야하는 소득(current earning)은 배당으로 재분류됨
- 독일 자회사가 이전가격조정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반환받아야 하는 소득은 외국 모회사의 ‘자본출자(capital contribution)’로 재분류됨
- 소득이 반환되는 경우에 납세자는 매입채무(AP)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이 독일 자회사에 자본출자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임
-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이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펀드를 사용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하우를 이용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하향조정을 허용하는 국내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국 절차에 따르게 됨

□ 정상가격에 의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소득을 이전한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은폐출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동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소득을 이전할 경우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은폐배당으로 해석할 수 있음

5 이중과세 방지제도

□ 개요

-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해외

원천소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음

- 그러나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및 일본과 같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나라들도(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설립한) 피지배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거주지국 과세를 배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예를 들어 피지배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을 충족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이처럼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부 국가는 그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 국가는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대신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도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입법례

- 독일의 개인과 법인거주자는 그들의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 외국소득이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건설, 탐사와 광산과 같은 특정 근로소득
 - 국제선박소득은 일반세율의 50%로 과세
 - 조세조약을 체결한 외국에서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

- 이처럼 독일은 국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외국소득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혼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특히 조세조약 하에서 면제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배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있고, 한도는 국별로 계산(per-country limitation)되며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는 특정 국가에서 지불한 외국세액을 국내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음

□ 지점소득

- 독일의 개인이나 법인이 독일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했다면 고정사업장(PE)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은 독일에서는 비과세 됨
- 과세면제를 위한 조건은 조세조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고 외국에서 수취하는 소득이 그 외국에서 과세되었어야 함. 다만, 면제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이자, 배당, 로열티나 자본이익을 포함함

□ 포트폴리오소득

- 독일에서도 포트폴리오소득과 사업소득은 세무상 다르게 취급된다.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고정사업장(PE)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배제되지만, 포트폴리오소득은 그것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고정사업장(PE)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만 자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됨
-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은 독일의 과세소득이 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 원천세는 국가별 한도를

가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됨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국별 한도에 따라 원천지국 납부세액의 전액 내지 잔여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자회사의 배당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천지국 과세에 준하는 과세체계를 택하고 있으므로 내국회사/외국회사의 배당금에 과세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배당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됨

□ 간접투자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도

- 독일의 폐쇄형 투자펀드(closed-end funds)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이자, 배당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됨. 한편 공개형 투자펀드(open-end investment)는 신탁과 같이 도관으로 취급되어 수익의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와 사업소득이 모두 면제
- 독일의 배당소득에 관하여 내국 투자기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배당세액 공제액은 투자자 단계에서도 공제할 수 있으며, 투자기구가 납부한 외국 세액으로서 더 이상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은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보고 되어야 함
- 한편 직접투자과 달리 간접투자의 경우는 국별 외국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독일 세액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음. 반면, 외국투자기구(외국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그 공제가능성이 제한되는데, 독일 투자자들은 투자기구가 분배한 소득에 대한 외국원천세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한이 외국펀드투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6 조세회피 방지제도

□ 독일의 조세회피 방지제도

- 독일의 조세피난처 세제는 1972년에 제정된 「대외관계과세법」(Auensteuergesetz, AStG)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국내 납세자가 독일 국내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 다른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그 기지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독일의 제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동적 소득을 특정하여 거래접근 방식을 취하는 미국과 유사하며 조세피난처 회사의 유보소득을 주주 내지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조세피난처 판정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서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수동소득이 25% 미만의 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를 말함
- 그 세율은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전부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무방하며, 외국법인을 기지회사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독일의 거주자 내국법인 및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주주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합계가 자본 혹은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각 주주 등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비율에 따라 당해 주주 등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
- 독일 주주 등의 출자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합산 대상소득을 얻은 사업연도 말에 간접보유의 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외국법인을 기지회사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독일법을 근거로 산정함
- 또한 조세피난처 판정에 있어 세율의 판정은 총소득에 대한 개념이 아닌 수동소득 단위로 산출됨

7 독일이 맺은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국가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건설공사)	배당	사용료 소득	이자	재산세에 적용여부
이집트	6개월 이상	15%	15%	15%	yes
아르헨티나	6개월 이상	15%(X)	unlimited(X)	10%	yes
아르메니아	(구소련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됨)				
아제르바이잔	12개월 이상	15% / 5%	5%	10%	yes
오스트레일리아	6개월 이상	15%	10%	10%	yes(X)
방글라데시	183일 이상	15%	10%	10%	no
백러시아	12개월 이상	15% / 5%	3%	5%	yes
벨기에	9개월 이상	15%	0%	15%	yes(X)
볼리비아	6개월 이상	D: 10% V: 15%	15%	15%(X)	yes
보스니아	(구유고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됨)				
브라질	12개월 이상	15%(X)	15%(X)	15%	yes
불가리아	12개월 이상	15%	5%	0%	yes
중국	6개월 이상	10%	10%	10%	yes
코트디부아르	6개월 이상	15%	10%	15%	yes(X)
덴마크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에쿠아도르	12개월 이상	D: 15% V: unlimited	15%	15%(X)	yes

국가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건설공사장)	배당	사용료 소득	이자	재산세에 적용여부
에스트란드	9개월 이상	15% / 5%	10%	10%	yes(X)
핀란드	12개월 이상	15% / 5%	5%	0%	yes
프랑스	12개월 이상	D: 15% / 5% V: 15% / 0%	0%	0%	yes(X)
게오르기아	6개월 이상	10% / 5%	0%	0%	yes
가나	9개월 이상	15% / 5%	8%	10%	yes
그리스	12개월 이상	25%	0%	10%	yes(X)
영국	12개월 이상	15%	0%	0%	yes(X)
인디아	6개월 이상	10%	10%	10%	yes(X)
인도네시아	6개월 이상	15% / 10%	15%	10%	yes
이란	6개월 이상	20% / 15%	10%(X)	15%	yes
에이레	12개월 이상	D: 10% V: unlimited	0%	0%	yes
아이슬란드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이스라엘	12개월 이상	25%(X)	5%	15%(X)	yes
이탈리아	12개월 이상	D: 15% V: 15% / 10%	5%	10%	yes(X)
자마이카	6개월 이상	15% / 10%(X)	10%(X)	12.5%(X)	yes
일본	12개월 이상	D: 15% V: 15% / 10%	10%	10%(X)	yes
유고슬라비아	12개월 이상	15%	10%	0%	yes

국가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건설공사장)	배당	사용료 소득	이자	재산세에 적용여부
캐나다	12개월 이상	15% / 5%	0%	10%	yes
카자흐스탄	12개월 이상	15% / 5%	10%	10%	yes
키르기스탄	12개월 이상	15% / 5%	10%	5%	yes
케냐	6개월 이상	15%	15%(X)	15%	yes
한국	12개월 이상	15% / 5%(X)	10%(X)	2/10%	yes
크로아티아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쿠웨이트	9개월 이상	15% / 5%	10%	0%	yes
레트란드	9개월 이상	15% / 5%	10%	10%	yes
리베리아	6개월 이상	15% / 10%	10%	20%(X)	yes(X)
리타우엔	9개월 이상	15% / 5%	10%	10%	yes
룩셈부르크	6개월 이상	15% / 10%	0%	0%	yes
말레이시아	6개월 이상	D: 15% / 5% V: 0% / 0%	10%(X)	15%	yes
말타	9개월 이상	D: 15% / 5% V: 0% / 0%	0%	0%	yes
모로코	12개월 이상	15% / 5%	10%	10%(X)	yes(X)
마우리티우스	6개월 이상	15% / 5%	15%	unlimited	yes
마케도니아	(구유고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됨)				
멕시코	6개월 이상	15%/5%	10%	15%	yes
몰다우	(구소련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됨)				
몽고	6개월 이상	10% / 5%	10%	10%	yes(X)
나미비아	6개월 이상	15% / 10%	10%	0%	yes
뉴질랜드	12개월 이상	15%	10%	10	yes

국가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공사장 등에 있어서...)	배당	사용자 소득	이자	재산세에 적용여부
네델란드	12개월 이상	15% / 10%	0%	0%	yes(X)
노르웨이	12개월 이상	15% / 10%	0%	0%	yes
오스트리아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파키스탄	6개월 이상	15% / 10%	10%	20%	yes
필리핀	6개월 이상	15% / 10%(X)	10%(X)	15%(X)	yes
폴란드	12개월 이상	15% / 5%	5%	5%	yes(X)
포르투갈	6개월 이상	-	10%	15%	yes
루마니아	12개월 이상	15% / 5%	3%	3%	yes(X)
러시아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잠비아	9개월 이상	15% / 5%	10%	10%	yes
스웨덴	12개월 이상	15% / 0%	0%	0%	yes
스위스	12개월 이상	15% / 0%	0%	0%	yes
세르비아	(구유고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됨)				
짐바브웨	6개월 이상	20% / 10%	7.5%(X)	10%	yes
싱가포르	6개월 이상	15% / 5%	8%	8%(X)	yes(X)
슬로바키아	12개월 이상	15% / 5%	5%	0%	yes
슬로베니아	12개월 이상	15% / 5%	5%	5%	yes
스페인	12개월 이상	15% / 10%	5%	10%(X)	yes
스리랑카	180일 이상	15%	10%(X)	10%	yes
남아프리카 공화국	12개월 이상	15% / 7.5%	10%	10%	yes(X)
타키스탄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타일랜드	6개월 이상	20% / 15%	25%	25%	yes
트리니다드앤 토바고	6개월 이상	20% / 10%(X)	15%(X)	15%(X)	yes

국가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공사장 등에 있어서...)	배당	사용자 소득	이자	재산세에 적용여부
체첸	12개월 이상	5%	0%	0%	yes
체코슬로바키아	12개월 이상	5%	0%	0%	yes
터키	6개월 이상	10%	15%	15%	yes(X)
튀니지	6개월 이상	15%	10%	10%	yes
투르크메니스탄	(구소련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됨)				
소비에트연방	12개월 이상	15%	0%	5%	yes
우크라이나	12개월 이상	10% / 5%	0%	5%	yes(X)
헝가리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우루과이	12개월 이상	15%	15%	15%(X)	yes
미국	12개월 이상	15% / 5%	0%	0%	yes
우즈베키스탄	12개월 이상	15% / 5%	3%	5%	yes
베네수엘라	12개월 이상	15% / 5%	5%	5%	yes(X)
아랍토후국	9개월 이상	15% / 5%	0%	0%	yes(X)
베트남	6개월 이상	15% / 5%	10%	10%	yes(X)
사이프러스	6개월 이상	15% / 10%	0%	10%	yes

주: X: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이 가능

D: 독일

V: 상대체약국

자료: Vogel/Lehner, Doppelbesteuerungsabkommen, Kommentar, Vrelag C.H.Beck, 5te Aufl., 2008, Muenchen.



제 2-2 장 독일의 조세제도

(소득세·법인세)

1. 독일 세제 개요
2. 소득세 개요
3. 소득의 유형과 소득세 과세체계
4. 주요 계정별 소득·비용 계산규정
5. 소득세 기타사항
6. 법인세 개요
7. 법인세 과세소득
8. 법인세 기타사항

1

독일 세제 개요

□ 독일 세제 개황

- 독일에는 각 주 공통으로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기타 연방세로서 보험세, 담배세, 석유세 등이 간접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세로서는 자동차세, 토지 취득세가 있음

□ 독일의 기업 관련 조세 제도

-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짐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며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Koerperschafts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통독세(Solidaritaetszuschlag) 부과
- 지난 '08년 1.1일 독일 정부는 법인 세율을 과세 대상 수입의 15%로 인하는 등 기업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촉진과 해외 기업 유치 효과를 보고 있음

□ 법인세(기업소득세)

- 법인은 영리 사업체로 분류되며 모든 수입은 발생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08년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영업세의 기본세율도 5%에서 3.5%로 낮추어 기업의 실효세율을 평균 30% 이하로 경감

- 아울러, 통독 이후 '95년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통독세를 법인세의 5.5% ($15\% \times 5.5\% = 0.825\%$)를 부과

□ 개인소득세

- '03년부터 추진된 바 있는 Agenda 2010 정책에 따라, 소득세율 인하, 기업의 사회비용(연금, 실업 급여 등) 절감정책이 추진
- 소득세는 개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 원칙적으로 모든 원천 소득을 합산한 후 25%의 단순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소득세율이 단일세율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여부, 주요 관리장소, 청구/지불의 장소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
- 독일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무 행정에 관련하여 하나의 세무등록 번호가 주어지며, 신청 시 추가로 부가가치세 번호가 각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짐
- '07년 1월이후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로, 서적, 신문 및 식료품(음료수 제외) 등의 특정재화와 서비스에는 기존의 7%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의료, 교육, 자선, 금융 서비스 등은 면세)
- '10.1.1.부터 호텔·숙박업계에는 기존의 19%에서 인하된 7%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 2008~2011년도 주요 변경 조세 제도

-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08년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영업세의 기본세율도 5%에서 3.5%로 낮추어 기업의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30% 이하로 경감
- '08년도부터 이자 비용 손금 산입 한도 도입이 되어, 연간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Dpreciation, Amortization)의 30%까지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
- 영업세(거래세)의 손금산입 제한으로 영업세 납부금액이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호텔·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9%에서 7%로 대폭 인하

□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 외국 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됨
- 조세 협약(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 부담 없이,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 동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기타 부수적인 기능에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 시켜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 만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함
- 독일 거주 법인은 독일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94개국 이상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 세액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에서는 소득원천 국가나 거주 국가 중 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상대국은 동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

2

소득세 개요

□ 특징

- 소득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공평성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세목으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세수 비중을 차지

□ 과세원칙

- 소득원천 이론과 순자산증가이론을 절충
 - 규칙적으로 유입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일회적이거나 우연한 재산 증가도 과세대상이지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유형은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열거된 소득형태만을 포함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및 조세채무자는 자연인이며, 한 자연인의 인적 납세의무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남
- 납세의무는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로 구분
 - 주소나 일상적 거소를 국내에 갖고 있는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납세의무 즉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갖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49조에서 열거된 국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짐

- 순전히 과세상의 이유로 스위스 등의 저세율국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외조세법에 확장된 제한적 납세의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
 - 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 10년에 걸쳐 최소한 5년 이상 무제한적 납세의무자였으며, 소위 저세율국가로 이주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에 주소를 정하지 않은 자로, 중요한 경제적 이해를 여전히 국내에 갖고 있는 이주자에게 확장된 제한적 납세의무가 적용

□ 비과세소득

- 기본적으로 비과세소득은 재정적 성격의 비과세, 정책적 성격의 비과세, 그리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비과세로 구분
- 소득세법 제3조 40호에 따라 법인세 납부 후에 주주나 지분소유자에게 분배된 배당과 기업이나 기업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8년까지는 절반 과세원칙에 따라 50%가 비과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40%

3

소득의 유형과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계산의 기본원칙

- 기간과세 원칙, 순소득과세 원칙, 명목가치에 따른 소득산정 원칙, 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배제 원칙(사적 혹은 주관적 순소득 원칙)
 - 기간과세 원칙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범위가 하나의 역년 동안에 또는 대개 12개월의 기간인 하나의 사업연도 동안에 획득한 소득으로 제한된다는 것

- 순소득과세 원칙은 각 소득유형별로 그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과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소득 금액만이 과세된다는 원칙
- 명목가치에 따른 소득산정 원칙이란 소득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유로”라는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

□ 과세소득 산정 체계

- 각 소득유형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연령경감금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 산출
- 이렇게 구해진 과세소득이 과세표준이며,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법정소득세액에 다시 외국세액공제와 기타 감면, 그리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자본소득세를 더하여 납부세액을 구함

□ 소득의 유형

- 독일 소득세법은 소득을 농업 및 산림업 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각 소득유형의 금액들을 합쳐서 계산
- 농림업 소득
 - 농림업분야의 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 비하여 소득세법상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그 폭은 최근의 조세개혁으로 줄어들음
 - 비과세 한도액은 670유로(부부합산과세 시 1,340유로)로 총소득이 30,7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부부합산과세 시 61,400유로)에는 농림업 소득이 670유로 이하라고 하더라도 합산
 - 평균율에 의한 소득계산이 허용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사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포함되며, 양도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동 개인이 55세 이상이거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지속적인 직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한 사업체 또는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공제가 적용
- 특별공제의 액수는 45,000유로이며 한 사람에게 평생 한번만 허용되고, 양도소득이 136,000유로를 넘어서면 넘어서는 액수만큼 줄어듦
- 자본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을 개인이 지난 5년 동안 직접 혹은 간접으로 1%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과세

○ 독립적 활동소득

- 전문인적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독립적 활동(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도 그 업체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공제의 혜택이 적용

○ 비독립적 활동소득(근로소득)

-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920유로의 근로소득일괄공제가 허용
- 월소득 400유로 이하의 미니 잡(job)의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되나 고용주는 고용주가 개인 가계인 경우(가사보조) 지불액의 12%, 그 외의 경우는 25%의 일괄세율로 고용주 부담금을 납부

○ 자본수익

- 배당, 이자, 그리고 금융자산 양도소득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로 801유로(부부합산 1,602유로)를 공제(실제 경비 고려안함)

- 법인세 납부 후에 주주나 지분소유자에게 분배된 배당과 기업이나 기업 지분의 양도소득에 40%의 비과세
- 55세 이상의 납세자나 직업능력을 상실한 납세자에게 기업을 매각한 양도차익에서 45,000유로를 공제하며, 이 매각으로부터의 양도차익이 136,000유로를 넘는 경우 그 넘는 액수만큼 공제액수는 줄어듦

○ 임대소득

- 실물자산이나 무형의 권리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
- 임대소득은 해당 실물자산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공제가 인정
- 건물의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인정되나 토지구매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건물의 구매나 건설비용만이 상각대상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 항목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주기적으로 수입 되는 것을 의미
- 국회의원, EU의회의원, 기타 다른 의원들의 보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사망위로금 등도 기타소득이고, 동산의 간헐적 임대나 중개로 부터의 수입 등도 기타소득
- 연금소득이나 기타 주기적인 소득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102유로를 필요경비로 인정, 이혼하거나 장기적으로 별거중인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생활비는 지불자에게 있어서 연간 13,805유로를 한도로 특별지출로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피지불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이 경우에도 102유로의 일괄적 필요경비는 인정)
- 동산(피아노, 자동차 등)의 임대소득이나 간헐적인 중개행위로부터의 소득은 256유로에 미달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이때 필요경비가 수입을 넘어선다고 하여도 이는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못함

□ 이익계산방식의 종류

○ 소득세법은 농업·산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이익을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는 잉여수입을 세법상 소득으로 하며, 이익 및 잉여수입의 계산 방식 다음의 7가지

- ① 기업자산비교를 통한 소득계산 : 사업자의 소득을 당기와 전기의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자산을 비교하여 계산
 - 대상자 : 조세기본법 제140조 및 141조에 따라 기장과 결산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농림업 종사자, 자발적으로 기장과 결산을 행하는 농림업 종사자, 자발적으로 기장과 결산을 행하는 자유직업가, 기장 의무가 없는 영리사업체가 아래의 ②의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기록을 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약식 소득계산방식 : 현금지출을 초과하는 현금수입을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
 - 대상자 : 소규모 사업체와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기타 독립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규에 의해 기장 및 정기적 결산을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지만, 이 방식 적용에 필요한 기록은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
- ③ 잉여수입유형의 소득에 대한 소득계산방식 :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계산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계산이 이루어짐
- ④ 표준을 적용을 통한 소득계산방식 : 이는 기장의무가 없으며 자발적으로도 기장을 행하지 않는 사업체로 소득세법 제13a조에 제시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농업·산림업 종사 사업체에 적용

- ⑤ 선박에 대한 톤수(Tonnage) 기준 소득계산방식 : 상선을 운영하여 국제 해운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에서 운영하는 국제해운 투입 상선의 총등록톤수(Tonnage)에 따라 이익을 계산 가능
- 투입되는 상선별로 등록톤수 100톤마다 하루당 1,000톤까지는 0.92유로, 그 이상부터 10,000톤까지는 0.69유로, 그 이상부터 25,000톤까지는 0.46유로, 그 이상부터는 0.23유로를 이익으로 함
 - 기업의 신청에 의하며 한번 신청하면 번복할 수 없음
- ⑥ 기업이나 지배주주지분의 처분이익의 계산방식 : 기업이나 지배주주지분의 처분이익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한 양도가격에서 원가(취득원가 혹은 생산원가)를 뺀 것
- ⑦ 조세기본법 제162조에 따른 추정에 의한 소득계산 : 추정방식은 기장이 형식적 또는 실제적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수입-지출계산 방식의 적용을 위한 충분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적용

4

주요 계정별 소득·비용 계산 규정

□ 접대비

- 사적인 동기에 의한 접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 목적을 위한 접대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접대도 손금산입 범위 제한
 - 사업상, 영업상 목적으로 접대를 하는 경우 접대비의 70%만 손금 인정되나 자사 직원에 대한 지출은 100% 손금 산입
 - 과세당국에서 회사직원의 접대비 사용에는 보다 까다로운 증빙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접대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됨

- 영업비용으로 공제되는 접대비라 함은 손님에게 제공한 식사와 담배·커피 등과 같은 기호품 제공에 들어간 부대비용을 말하며, 사냥·요트 등에 사용된 접대비는 전액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함
-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또 해당 비용은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이어야 함
- 접대금액의 적절성 여부는 건별로, 산업부문별로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사업자가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투자비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 수주가 예상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피접대자의 지위 등도 판단의 보조적인 기준이 됨
- 회사의 직영식당에서 접대하는 경우 1인당 16유로 이상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고객 등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1회계 연도 내에 1인에게 35유로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선물을 증정할 수 없음
 - 1회계연도 내에 특정 고객 1인에게 그 이상의 액수에 해당하는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손금불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
- 지출 금액과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접대비에 대하여만 세무목적상 영업비용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접대내용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접대목적, 접대받은 사람, 접대장소, 접대일시, 접대비용
 - 상기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거나, 시일이 지난 뒤에 증빙이 제출되는 경우 접대비 인정이 부인되며, 관련 증빙자료는 6년간 보관
- 해외의 접대의 경우 해외소재 식당의 영수증이 등록된 계산기로 발행되지 않고 손으로 작성된 것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관광프로그램이 포함되거나 동반자가 포함되는 인센티브 여행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접대를 받은 사람의 과세대상 소득
-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회사 행사시 직원들에게 행해진 접대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직원을 위한 야유회 등의 행사는 1년에 두 번 직원 1인당 110유로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만약 1년에 3회 이상 시행되거나, 110유로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직원에 대한 급여로 간주
 - 그러나 이러한 회사행사와 별도로 장기근속직원을 위한 송별회 등에서의 직원 접대비는 직원 1인당 110유로 한도에서 사용되는 경우 1년 2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회사는 또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후 직원격려 차원 등으로 직원 1인당 한달에 44유로 한도에서 직원을 접대할 수 있으나, 장기근속 직원의 송별회 등에 참석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달에 직원격려 접대를 할 수 없음

□ 출장비용

- 출장비는 교통비, 출장인의 식사비, 숙박비 및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예: 주차비, 팁, 거래상대방에게 줄 작은 선물 등)이 포함된다. 단 출장 시 행한 접대에 대하여는 출장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에 포함
 - 여행경비가 세무 목적상 비용 또는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행의 목적이 업무상(betrieblich) 또는 직업상(beruflich) 이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여행경비는 항목별로 제한된 총액 수준을 넘을 수 없음
 - 고객 면담, 해당 분야의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이 주요 이유

- 출장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러한 회사 외부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장으로 보지 아니함
- 명백하게 직무상 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하게 되는 해외출장에서 발생한 지출도 영업비용이나 필요비용으로서 인정

□ 기부금

- 공공복리,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공법상의 국내 법인체, 국내 사무소, 정치, 사회단체, 재단 등에 제공한 기부금(회원의 회비 포함)은 총소득의 20%까지, 또는 총매출과 과세연도에 지급한 총급여 합계액의 0.4%까지 특별비용으로 공제가능
 - 스포츠협회, 문화활동동호회, 지역문화연구회, 지역문화지킴이회, 동물 애호가회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 또는 회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가능
- 기부금 또는 회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부금 또는 회비를 받는 단체의 성격이 조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라야 함
 - 제공자와 수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수혜자가 공간적으로나 업무상 특정 소규모집단에 국한되지 말아야 함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수령단체가 법인세납부의무면제단체임을 명시한 정식 기부금 양식을 발행하여야하며,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이 잘못된 영수증임이 밝혀지면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가 손실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 손실세금액수는 제공된 기부금액의 30%로 간주

-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우선 소득세법 제34g조에 의하여 기부금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때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최대한도는 1,650유로이며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
 - 이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신 소득세법 제10b조 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650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를 한도로 기부금으로 인정

□ 지급이자

- 지급이자는 우선 해당기업의 이자수입만큼은 손금인정이 되고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는 이자와 감가상각반영 전 사업이익의 30% 한도까지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
 - 이 규정은 수입이자를 초과하는 지급이자의 총액이 100만유로 이하이거나,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계열사가 아니거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계열사이거나, 혹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전 회계연도의 자기자본비율이 계열사 전체의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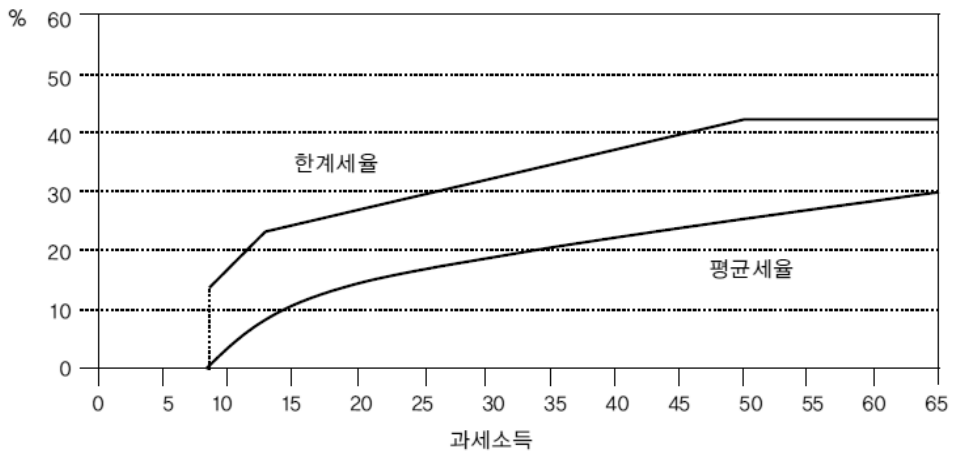
□ 감가상각

- 사업상 사용하는 재화의 가치(취득원가/생산원가)는 감가상각액, 특별감가상각액, 증액상각액, 즉시상각액, 통합상각액만큼 감액되어 기록
- 경험적으로 보아 사업자가 일년 이상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용 재화는 매년 취득원가/생산원가의 일정 부분만큼 상각(정액법)
 - 업무용 건물은 3%의 정액법으로 상각

- 정액법 대신에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정률법에서 상각률은 정액법의 경우의 두배, 그리고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음

5 소득세 기타사항

□ 세율



- 7,834유로의 기본공제구간, 7,835유로에서 13,139유로까지는 경과구간, 13,140유로에서 52,551유로까지는 선형누진적 구간, 52,552유로부터 250,400유로까지는 높은 비례세율 구간 250,401유로부터는 부자세 구간
- 세 번째 구간은 소득세율(각 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우리나라처럼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고안 (각 구간의 세율을 방정식으로 규정)
 - 마지막 구간에는 45% 세율이 적용(2007년부터 도입)

□ 세액 결정방식

- 세액결정은 크게 개인세액결정과 부부세액결정으로 구분되는데, 부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은 개인세액결정을 적용
- 개인세액결정의 대상으로는 ① 독신자, ② 지속적으로 별거 생활하는 부부, ③ 부부 중 한사람만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④ 미망인과 이혼자 등이 해당되며 개인세액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
- 부부세액결정방법은 공동세액결정과 분리세액결정, 결혼한 연도에 적용되는 특별세액결정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공동세액결정방식은 부부의 합산소득을 기초로 누진세율이 결정되지 않고, 합산소득을 둘로 나눈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율 및 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 세액을 두 배로 하여 부부의 최종 세액을 결정
- 부부관계가 새로이 성립되는 과세연도에 부부는 소득세법 제26c조에 따른 특별세액결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고 과세

6

법인세 개요

□ 법인세의 성격

-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연결납세제도와 파트너십과세제도 시행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취급되지 않으며 법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어 과세.
-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에 일부 포함되는데 이는 법인이 국내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전가격을 통하여 회피할 때 어느 정도까지 외국 법인에 대한 소득이전을 국내법인의 해외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

□ 납세의무자

- ① 자본회사의 법적 형태를 갖는 기업
 - EU형 회사, 주식회사, 주식형 합자회사, 유한회사
- ② EU형 조합을 포함한 조합
- ③ 보험 및 연금펀드연합체
- ④ 기타 사법상의 법인
- 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관
- ⑥ 공법상의 법인이 운영하는 영리사업체
- 위 법인들 중 자본회사가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회사 또는 단체의 소재지는 납세의무의 한계를 규정
 - 관리장소 내지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무제한적 법인세 납세의무
 - 관리장소 및 주소가 국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 법인세 납세의무

- 위에서 열거된 무제한 납세의무자 중 항목 ①에서 항목 ④의 법인은 반드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나 항목 ⑤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소득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로 직접 귀속 되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7 법인세 과세소득

□ 과세소득 일반 규정

-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계산, 평가, 감가상각 등에 대한 규정들은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산정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 법인세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이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해당 역년의 주주나 지분소유자에게 배당하기 전의 과세대상 소득
- 다른 조항의 규정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취득하는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일반적으로 과세됨
- 재무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기준성의 원칙은 자본회사의 소득계산과정에도 적용되며, 정규부기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음

□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

-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기업재산 비교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 자본회사의 경우 개인과 달리 그 법률적 특성상 대표주주에 대한 급여와 주주의 자금공여로부터의 이자 등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기에 경제적 결과를 갖는 사법상의 계약을 주주와 체결할 수 있음
- 세법과 회계의 수익·비용의 범위가 다르므로, 회사의 과세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음
 - 대표적인 사례로 배당, 은닉자본금, 지급이자 손금인정 등이 있음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

- 주식형 합자회사와 유사 자본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설립자본금 이외로 납입된 자본금에 대한 배당금 또는 그들의 경영에 대한 이익배당금 손금 인정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

-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 공익 목적을 위한 지출로서 국내의 공법상의 법인이나 국내의 공공사업소 혹은 법인세법 과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나 개인연합체, 펀드 등의 공익단체에 제공되는 기부금과 회비는 법인소득의 20% 또는 총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0.4%까지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그 해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월 공제 가능
 - 소득세법은 정당에 대한 기부금을 비용 공제하나 법인세에서는 비용 공제하지 않음

- 기부금 조항 이외에 감가상각, 접대비, 대손상각 등의 손금 규정과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규정은 법인세법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과 전적으로 동일
- 소득에 대한 조세비용(법인세, 인세)의 공제금지
- 자가소비 또는 은닉배당에 해당되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이 부인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도 인정하지 않음(이러한 세금들에 부가되는 지연이자 등 기타 관련비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
- 형사처벌 성격의 벌금도 공제될 수 없으며, 감사회와 기타 유사형태 회사 기관의 구성원 및 기타 경영감사를 위촉받은 자에게 보장되는 모든 유형의 보수에 대해 절반은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

□ 은닉배당

- 회사와 주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회사법적인 실제 관계를 은폐하고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이용되는 경우 적용
 - 급여 또는 주주에게 지급된 이자 등은 손금으로 자본회사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주주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자본회사는 손금을 고의적으로 높게 하여 일정기간의 과세대상 소득을 낮게 계상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대표주주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 급여액의 일정부분만이 경영활동에 대한 급여 성격의 보상이며, 나머지 부분은 소위 은닉배당(우회적인 이익배당)
 -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정상적인 경영책임자라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재산상의 이익을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본회사와 주주와의 특수관계로 인한 것으로 봄

○ 은닉배당의 주요 사례

- 주주가 대표자이며, 부적절하게 높은 급료를 받는 경우
- 회사가 주주에게 적정한 급료 외에 특별한 판매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연방조세법원은 회사수익에 연동된 주주에 대한 보너스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전체 수입의 25%를 넘거나 회사의 당기순이익의 50%를 넘는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봄)
- 경영책임자인 주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부적절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
- 회사가 주주에게 무이자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상황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주주가 회사에 상품을 제공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회사가 주주에게 상품을 인도하면서 지나친 가격할인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와 주주의 거래에서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주주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자산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 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회사가 주주의 채무나 기타의 의무를 책임지는 경우
- 회사가 주주에게 특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피고용자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관련 비용이 기업의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 주주가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나치게 높은 사례금을 받거나 회사가 주주에게 자문을 해주면서 전혀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사례금을 받는 경우 등

- 국제간의 은닉배당은 이전가격과세문제로 나타나며 이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상술
- 은닉배당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가산(익금산입)되며, 동시에 주주에게는 자본수익으로 과세

□ 자본수익

- 법인의 수입 중 자회사인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입과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얻은 양도차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과정에서 지급법인이 자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이것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이 종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타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그것으로 과세 종결
- 이자는 원천징수 후에 수취법인에서 익금산입되어 과세소득 산정에 포함되며 이때 원천징수액은 세액공제

8

법인세 기타사항

□ 결손금 공제

- 당해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511,500유로를 한도로 전년도로 결손소급공제가 가능하며 한도초과분은 차기로 이월가능

- 결손차기이월공제는 100만유로까지는 제한이 없으나 100만유로를 넘어서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60%까지만 공제를 허용
- 2008년 개정법 이전에는 법인세법 제8조4항에 따라 법인의 소유구조가 변경되었을때 변경 전 법인과 변경 후 법인 간에 법적·경제적 동질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결손공제가 가능했고
 - 회사 지분의 반 이상이 양도되고 절대적으로 새로운 자산으로 경영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경제적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제한
- 同 법인세법 제8조 4항은 2009년 발효된 2008년 개혁법에서 삭제되고 제8c조로 대체되고 신설된 제8c조는 결손금이월공제의 차등제한규정(지분율에 상응하는 결손공제의 소멸규정)을 포함
 - 5년 기간 내에 법인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인수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25% 이상 50% 미만 이전되었으면 지분인수시점까지 공제되지 않고 누적된 결손금의 공제는 이전된 지분비율에 상응하여 소멸하고, 결손누적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 이전된 경우 누적 결손금은 전액 소멸
 - 지분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증자는 지분의 이전과 동일
 - 외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 소재지 국가에서 취득한 동종의 소득으로만 상계 가능

□ 세율

- 법인세의 세율은 15%, 이 법인세율은 2007.8.27.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2008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
 - 법인세, 영업세, 연대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유효세율은 28.81%



□ 사업연도

-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기업이 한 역년 또는 사업연도에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계산
- 법인세법 제7조 3항에 따라 조세의 확정을 위한 과세표준이 매 연도마다 계산되며, 상법상 기장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역년과 다른 사업연도도 인정
- 사업연도의 이익은 그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역년에 획득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정기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



제 2-3 장 독일의 조세제도

(부가가치세, 영업세, 세무조사)

1. 부가가치세
2. 영업세
3. 세무조사
4. 기타 주요 세법

1

부가가치세(Umsatzsteuer)

가. 부가가치세 현황

□ 개요

- 부가가치세는 공동세로서 부과주체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임
- 과세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1호 이하 및 제15조)

□ 과세거래(§1 Steuerbare Umsätze)43)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사업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공급과 기타의 용역
- 재화의 국내수입, 오스트리아의 Jungholz지방과 Mittelberg 지방으로의 수입 (수입부가가치세)
- 국내에서 EU 역내의 거래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재화(취득부가가치세)

□ 과세표준(§10, 11 Bemessungsgrundlagen)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역내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거래의 대가, 즉 공급가액임

- 사업자가 고객의 이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적인 금액은 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은 관세와 통관비용을 포함한 수입시점의 가액, 즉 관세가격(custom value)임

□ 세율 (§12 Steuersätze)

모든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 표준세율은 19%를 적용함

- 식품, 음료, 약, 신문, 책 및 극장·박물관·콘서트홀 서비스, 가축의 사육 및 보유, 식물 등에 대해 경감세율 7%를 적용함
- 영세율은 주로 수출품과 역내 공급에 적용됨

□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함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소액부징수제도)

-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루고 있음
-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EUR17,5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EUR5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제19조 1항)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필요
 - 독일 내에서의 EU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이 EUR12,500을 초과하는 경우
 - 신규 교통수단의 EU 역내 공급
 - 납세자가 자신의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내공급에 대한 비과세규정, 면세 포기,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확인번호의 기재 및 매입세액 공제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 매입 및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계산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함
- 소규모 사업자 적용은 5년간 당해 사업자를 구속하며, 포기의사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19조 2항)

다. 표준을 제도

□ 개요

연방재무부가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3항에서는 지난 역년의 매출액이 EUR 61,356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평균적인 표준율(§23 Allgemeine Durchschnittsätze)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연방재무부는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납부세액 및 이의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어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함(부가가치세법 제23조 1항)
-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산정한 세액은 이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

□ 평균적인 표준율 신청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⁴⁶⁾

- 평균적인 표준율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매 역년의 최초 예정신고기한(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Voranmeldungszeitraum)은 역년의 매 분기로 하고 있다) 종료일 이후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받으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루어짐(부가가치세법 제23조 3항)
 - 평균적인 표준율 신청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신청의 시기는 결정세액의 변경이 불가능한 시점까지임
 - 철회 후 다시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경과하여야 함
 - 철회의 효과는 동 사업연도의 개시와 함께 적용됨

□ 업종별 평균적인 표준율

독일의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업종구분을 크게 4분류로 하고 그 4분류 안에서 구체적인 업종으로 세분하고 있음

- 4분류는 수공업, 소매업, 기타,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하고 있음
 - 수공업은 다시 23개 업종, 소매업은 18개 업종, 기타 사업은 6개 업종, 그리고 자유직업소득자는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총 54개의 다른 평균적인 표준율을 가지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과세함
- 당해 사업체의 전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적인 표준율을 54업종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체의 매입세액의 일부분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적인 표준율을 또 6업종으로 세분하고 있음

【전체매입세액(input tax) 계산을 위한 평균적인 표준율】

□ 수공업

1. 제빵업 : 매출액의 5.4%
2. 목공업과 가구업 : 매출액의 9.0%

3. 장식, 예술 및 수선용 철공업 : 매출액의 7.5%
4. 제본업 : 매출액의 5.2%
5. 인쇄업 : 매출액의 6.4%
6. 전기설비 : 매출액의 9.1%
7. 타일, 마루타일업과 기타바닥 및 이의 접착업 : 매출액의 8.6%
8. 이미용업 : 매출액의 4.5%
9. 정원관리업 : 매출액의 5.8%
10. 창문업 : 매출액의 9.2%
11. 건축 및 토목 : 매출액의 6.3%
12. 건축관련철공업, 가스설비업 및 수도설비업 : 매출액의 8.4%
13. 도색업 및 도배업 : 매출액의 3.7%
14. 실내 장식업 : 매출액의 9.5%
15. 여성용 모자제조업 : 매출액의 12.2%
16. 차량 수리업 : 매출액의 9.1%
17. 철물제조·수리업과 용접업 : 매출액의 7.9%
18. 재단 및 재봉업 : 매출액의 6.0%
19. 제화업 : 매출액의 6.5%
20. 석상조각업과 석공업 : 매출액의 8.4%
21. 모르타르 및 석회칠업 : 매출액의 4.4%
22. 소면사업 및 소모사업 : 매출액의 2.0%
23. 목수업 : 매출액의 8.1%

□ 소매업

1. 화훼 및 식물 : 매출액의 5.7%
2. 연료 : 매출액의 12.5%
3. 의약품: 매출액의 10.9%
4. 전기기구, 조명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수상기 및 축음기 : 매출액의 11.7%
5. 자전거 및 모터 부착자전거 : 매출액의 12.2%

6. 생선 및 생선가공품 : 매출액의 6.6%
7. 감자, 야채, 과일 및 열대과일: 매출액의 6.4%
8. 라커, 물감 및 기타 도료 : 매출액의 11.2%
9. 우유, 유제품, 유지방 제품과 계란 : 매출액의 6.4%
10. 식료품과 기호품 : 매출액의 8.3%
11. 의류 : 매출액의 12.3%
12. 친환경식품 : 매출액의 8.5%
13. 양화업 : 매출액의 11.8%
14. 과자류 : 매출액의 6.6%
15. 각종 섬유제품 : 매출액의 12.3%
16. 동물과 동물용품 : 매출액의 8.8%
17. 오락용 잡지 및 신문 : 매출액의 6.3%
18. 야생동물·조류 및 가금육 : 매출액의 6.4%

□ 기타영업

1. 아이스크림 가게 : 매출액의 5.8%
2. 민박업소(펜션포함) : 매출액의 6.7%
3. 여관 및 음식점 : 매출액의 8.7%
4. 건물 및 창문청소 : 매출액의 1.6%
5. 승용차로 행하는 여객운송 : 매출액의 6.0%
6. 세탁소 : 매출액의 6.5%Ⅲ. 외국의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 자유직업소득자

1. a) 조각가·조소가 : 매출액의 7.0%
 b) 그래픽전문가(상업그래픽전문가 제외) : 매출액의 5.2%
 c) 화가 : 매출액의 5.2%
2. 연극, 영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과 영상 및 음반제작에 필요한 역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협력·공급하는 자연인 : 매출액의 3.6%

3. 대학교원 : 매출액의 2.9%
4. 저널리스트 : 매출액의 4.8%
5. 작가 : 매출액의 2.6%

【일부매입세액(input tax) 계산을 위한 평균적인 표준율】

□ 업종 평균적인 표준율

1. 건축기사 : 매출액의 1.9%
2. 수제 노끈제조 : 매출액의 3.2%
3. 변리사 : 매출액의 1.7%
4. 변호사 및 공증인 : 매출액의 1.5%
5. 골뚝청소부 : 매출액의 1.6%
6. 회계업무전문종사자 : 매출액의 1.7%

□ 비영리법인의 평균적인 표준율(부가가치세법 제23a조)

법인세법 제5조 1항 9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평균적인 표준율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및 결산의무가 없는 법인, 사단 및 재단은 납세의무가 있는 매출의 7%의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단, 수입 및 EU 역내 취득에 대한 것은 제외함(부가가치세법 제23a조 1항)
 - 위의 평균적인 표준율 적용 제한은 수입 및 EU 역내 취득을 제외한 납세의무가 있는 매출이 직전사업연도 기준 3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임(부가가치세법 제23a조 2항)⁷²
 - 이 평균적인 표준율 적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매 역년의 최초 예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는

최소 5개 사업연도 동안 유효하나 동 신고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와 함께 적용됨(부가가치세법 제23a조 3항)

□ 농업 및 임업의 평균적인 표준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

농업 및 임업에 대한 평균적인 표준율은 다음과 같음

- 제재소(sawmill)의 생산물품을 제외한 임업 생산물품 공급의 경우 매출액의 5.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제재소의 생산물품, 음료와 알코올음료 및 기타의 용역의 경우 매출액의 19%
- 이외의 기타 거래의 경우 매출액의 10.7%
 - 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직전연도 매출에 대해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과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 과세(일반과세자)하여 줄 것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음
- 당해 신청은 5년 이상 해당 사업자를 구속하며,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의 효력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소급됨(부가가치세법 제24조 4항)

□ 현금주의회계제도

현금주의(cash basis)에 의한 과세 허용(부가가치세법 제20조)

- 현금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250,000유로(48)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자유직업종사자(소득세법 제18조 1항)

2

영업세(Gewerbesteuer)

가. 영업세의 성격

□ 개요

- 독일의 영업세는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중요성은 법인세에 버금감. 그러나 영업세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규모가 일정 한계를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과됨. 법인기업에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이 부과되며 그 외에 법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개인기업에게도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부문에서 법인세보다 세수 비중이 더 높음
- 이 밖에 영업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가지는 지방세로서 독일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세목임
- 영업세법에서는 영업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만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확정고지서와 함께 기업에게 전달되며,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금액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세 확정액을 기업에게 통지함

나. 과세대상 기업

- 영업세 납세의무 대상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는 사업자이며 자유직업가(freie Berufstaetigkeit: 인적용역 제공자)나 자산관리(Vermögensverwaltung)만 수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가지지 않음(영업세법 제2조 1항 1절)

다.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영업세법 제5조 1항 1, 2절), 영업세의 조세주체별 감면은 법인세 제5조에 따른 과세감면을 준용함(영업세 제3조).

라. 영업세 과세대상 소득

□ 과세기간

- 영업세도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회계(과세)연도 별로 과세되며 소득세와 법인세처럼 결손이월이 허용되며(영업세법 제10a조).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역년을 기준(영업세법 제10조 1항 14절)으로 하지만 상법에 따라 기장의 의무가 있고 역년과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동 회계연도의 소득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역년의 소득으로 봄(영업세법 제10조 2항).

□ 과세대상 소득(Gewerbeertrag)의 계산

- 과세대상 소득산출의 출발점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업의 이윤임(영업세법 제7조 1절). 여기에서 영업세법 제8조에서 규정된 익금산입 (Hinzurechnung)과 제9조에 규정된 손금산입(Kuerzung)이 반영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확정됨

□ 이월결손금의 공제

-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영업세에서는 손실의 소급공제(Verlustruecktrag)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월공제(Verlustvortrag)만 허용됨(영업세법 제10a조)

마. 영업세 과세표준의 계산

영업세 과세표준은 영업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100유로 이하를 절삭한 액수에 영업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기본공제액

- 자연인이나 인적회사의 경우 과세소득은 24,500유로만큼 공제됨(영업세법 제11조 1항 3절 1호). 자본회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며, 또 기업은 기업당 공제액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통하여 유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음

□ 영업세 과표 산출승수(=영업세 기본세율)

- 공제액을 제하고 100유로 단위 이하를 절삭한 후 영업세 산출승수를 적용. 영업세 과표 산출승수는 기본세율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며 이것이 납세자에게 통보되고 동시에 세액의 확정을 위해 법인 소재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도 통보됨
- 영업세 기본세율은 200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5%였으며, 자연인과 인적 회사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48,000유로까지 12,000유로당 1%에서 4%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차등세율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2008년부터는 차등 세율이 없어지고 기본세율도 3.5%로 낮추어 일원화되었음

□ 절차

- 영업세 과세표준은 관할 세무서가 발행하는 영업세과세표준통지서에 의하여 확정됨(조세기본법 제184조). 영업세계산통지서는 법인세통지서가 변경되고 그 변경이 과세소득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수정하여야 함(영업세법 제35b조 1항)

바. 영업세 과세표준의 분할

- 기업이 몇 개의 사업장을 여러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거나 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과세연도 중 사업장이 한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세 과세표준은 관련되는 자치단체에 분할되어야 함(영업세법 제28조, 조세기본법 제185조 이하). 과세표준을 분할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의 비율이 분할 기준이 됨(영업세법 제29조).

사. 납세의무의 발생, 납세신고 및 징수

□ 납세의무의 발생

- 영업세 납세의무는 영업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과세연도의 종료와 함께 발생함. 영업세 예납의무는 해당 분기의 시작과 함께 이미 발생함(영업세법 제 21조).

□ 영업세의 확정

-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액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에 의하여 확정됨.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영업세 과세표준을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결한 징수율(Hebesatz)에 곱하여 최종 징수세액을 확정함. 이 징수율은 개별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수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함. 현재 징수율은 법정 최저 징수율이 200%부터 490%까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매우 큼
- 영업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영업세통지서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세기본법의 절차규정(조세기본법 제1조 2절 1~4호)이 준수됨

□ 예납세액의 확정, 징수 및 정산

- 영업세는 기본적으로 매 분기별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까지 예정납부되어야 함(영업세법 제19조 1항). 예납세액은 예납통지서에 의하여 확정(조세기본법 제155조 1항 및 2항 4호 이하). 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 영업세과세표준통지서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영업세 확정통지서를 보낼 때 동 영업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 해 예납세액을 확정하여 함께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 임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세무서의 영업세과세표준통지서에 따라 기 통보한 예정납부세액을 과세연도 중 조정. 납세의무자는 예납세액상향조정통지서를 받으면 추가 납부액을 1달 내로 납부해야 함(영업세 제19조 3항).

□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는 영업세 과세표준의 확정을 위한 신고서와 영업세계산금액의 분할(영업세법 제28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영업세법 제14a조, 제25조).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영업세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영업세법 제5조).

3

세무조사(Gewerbesteuer)

가. 세무조사의 성격

□ 개요

- 독일에서의 세무조사는 외부세무조사(Aussenpruefung: 조세기본법 제193-207조), 세무사찰(Steuerfahndung: 조세기본법 제208조), 세무점검(Steueraufsicht:

조세기본법 제209-217조)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은 외부세무조사임. 이를 통하여 세무관서 외부의 납세자 활동의 현장에서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함

- 세무사찰은 조세범처벌에 관련하여 탈세 적발, 관련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역할도 담당함(조세기본법 제208조 1항 1절).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적인 기능(조세형사법적 기능)과 조세법적인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 분야를 수행하는 세무사찰요원에게는 검찰의 권한이 일부 부여됨. 또한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모두 부여되며 동시에 세무조사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세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부 권한 행사의 제한적 요소는 세무사찰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납세자에게는 외부세무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협조 의무가 존재
- 세무점검은 조세기본법 제209조에 의하면 관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에 적용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이나 과세대상인 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것임. 세무점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으로, 담당 공무원은 업무수행시간 내에 해당되는 점검대상 토지, 건물, 배, 차량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살필 권한이 있으며 점검 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 의무가 있음
-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하면 외부조사를 의미하며 외부조사 그 자체를 세무조사(Betriebsprüfung)라고 지칭하기도 함. 조세의 부과 절차와 외부조사가 과세당국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두 가지의 업무 분야인지에 대하여는 조세기본법에 언급이 없음. 따라서 독일의 개별 주에서는 외부조사담당부서가 각기 다르게 조직되어 있음

나. 독일의 불성실 납세행태 제재 현황

- 무기장(장부·기록 미보관, 파기)

- €25,000 이행강제금 반복적 부과, 고의성 있으면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세무조사 비협조(조사 불응, 자료제출 거부)
 - €25,000 강제금 반복적 부과, 전산망 불완전 접근 또는 현장조사 불응시 €25,000 ~ €250,000 까지 과중부과
- 허위사실 진술, 허위문서 제출
 - 5년 이하 징역(중대한 경우 6월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인한 경우 €50,000 이하 과태료 부과
- 세무조사 협력의무 위반시 입증책임
 -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 분담. 다만,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도가 크게 완화(국외 사건의 경우는 납세자 증명책임)



제 3 장 독일의 투자환경

1. 독일 투자환경
2. 독일 투자입지 여건
3. 진출형태별 절차
4. 독일의 주요 투자법

1

독일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 독일의 투자 환경

-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투자국이며, 일자리의 25%가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등 수출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독일교역의 60% 이상은 유럽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독일은 주요 기간 산업인 기계공업·자동차·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높은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나노·생명공학·의료기술·신재생에너지 등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성장 산업 부분 의 투자 유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동독 지역의 경우, 통독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와 주정부간의 고도기술 투자유치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
- 그 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인프라, 유럽 최대의 시장규모, 우수한 물류 시스템은 독일의 매력을 상승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음
- 아울러 독일은 '08.1.1. 조세제도를 개정하여,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 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08.12.11일 기존의 독일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InvZulG 2010)하여, '10년 1.1일 이후부터 '14년까지 연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음

- '09년도 경기 불황을 잘 극복한 독일은 '10년 총 2조 4,976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6%에 이르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호조세는 '11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으며, 10년 FDI 순유입 규모는 348억 3,300만 유로에 달함
- 그러나 '10년 상반기 이후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기업의 투자는 '11년 상반기 유럽재정위기 심화우려와 함께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독일에는 45,000개 이상의 외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총 300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야는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임
- 또한 해외기업의 대독 주요 투자 분야는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동차, 기계, 화학 등으로, 세계 FDI 투자의 약 4%가 독일로 유입되고 있음

□ 독일의 국가경쟁력

- 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에서 독일은 2009/2010년도 보다 두 계단 올라선 5위를 기록하였음
- 기업전략·경쟁력·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는 이 지표에서 독일은 스위스·스웨덴·싱가포르·미국 다음으로 사업하기 좋은국가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유엔무역개발 회의(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0의 집계에서도, 독일의 FDI 유치규모는 '08년 세계 10위를 차지한 데 이어 '09년에도 13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글로벌 투자지로서 견고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음

나. 투자지로서의 장점

□ 유럽 최대의 시장이자 유럽 진출의 교두보

- 독일은 약 8,000만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 최대의 시장으로 독일의 판매 시장 규모는 유럽시장의 20%에 이르며, 또한 1인당 GDP 역시 30,554억 유로로 유럽 내 상위권 대이다. 또한 꼼꼼한 독일인의 특성상 독일시장에서 인정받은 제품은 다른 유럽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일종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시장 진출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우수한 인프라

-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부터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화물 1위, 승객 2위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및 20여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DHL, DB 등 세계 굴지의 물류회사를 겸비하고 있다. 총 연장 12,044 km 길이의 Autobahn(고속도로)이 구축되어 있고 약 12만 6,000km의 철도, 1만 9,000 km에 이르는 운하 또한 발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세계 인프라 순위에서 홍콩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수한 인적 자원

- 독일은 장인(Meister) 정신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또한 이중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일반 대학진학 과정 외에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직업 교육을 받으며, 특히 기업과 연계하여 on-the-job training 과정을 거친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독일의 총 고용인력의 80% 이상은 직업교육 내지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또한 메르켈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가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간 평균 임금상승률 역시 2%로 유럽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독일 노동시장의 단점으로 평가되었던 임금과, 노동법상의 유연성 부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근무의 질을 중시하는 독일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고도기술 집약 국가

- 독일은 고도기술 기반 산업의 투자 집중도 및 네트워크의 밀집성이 높아 외국기업의 R&D센터가 많이 입주해 있으며, 동유럽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도 핵심부품의 생산 기지나 연구소를 독일에 두는 경우가 많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기업의 R&D 투자가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독일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음
- 현재 독일의 연간 R&D 투자 규모는 총 GDP의 2.54%로 약 535억 유로에 달하며, 독일 정부는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생활 환경

- 독일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이면서도 영어가 잘 통용됨
- 또한 구 동독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적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함
-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Ernst & Young이 매년 발간하는 『독일 투자입지

(Standort Deutschland)』 2011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독일의 투자입지 매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년도와 동일한 5위를 기록하였음

- 또한 전년도에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독일의 투자 입지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총 응답자의 44%가 독일의 입지 매력도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단지 7%만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전망 역시 매우 긍정적인 편으로, 총 응답자의 47%가 독일 입지 매력도가 향후 3년 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단지 5%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특히 삶의 질, 운송 및 물류 인프라, 통신 인프라, 사회분위기 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통신 인프라, 근로자의 자질, 지속적인 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년도 대비 매력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교육 기관/연구소 인프라 및 R&D 수준과 문화와 언어, 투자자 접근성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친환경) 발전을 위한 노력, 법적·정치적 투명성과 안정성, 내수시장의 매력도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획득함.
- 이 외, 매력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매니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법적·정치적 투명성과 안정성이며, 이 외 통신 인프라, 교통·운송 관련 인프라, 사회적 분위기, 잠재 생산성, 근로자의 질적 수준, 임금 비용, 조세, 노동법의 유연성, 내수시장의 매력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특히 법적·정치적 투명성과 안정성과 텔레

커뮤니케이션 관련 인프라, 교통·운송 관련 인프라, 사회적 분위기 등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 외에도 잠재 생산성이나 노동법의 유연성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다. 투자지로서의 단점

□ 노동 비용

- 독일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문이 노동비용임. 이는 사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만큼, 이에 소요되는 부가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독일 내 고용의 경우, 일반 월 급여에는 높은 의료보험 및 간병 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용자와 고용주가 함께 나눠 부담함

□ 경직된 노동 시장

- 지난 5년 간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해온 독일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노동시장의 국제 경쟁력은 낮은 편임. 특히 동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3명 중의 1명이 노동법의 유연성 여부를 독일 투자매력도의 단점으로 꼽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3%의 경우, 오히려 노동법의 유연성을 강점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금 부담

- '08년 1.1일 이후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으로 대독일 투자는 상승세에 있으나 이 외 각종

사회보장 비용 등 기업 운영을 위한 부가비용은 타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

- 투자입지로서 독일이 다소 취약한 점으로는 임금비용, 노동법의 유연성, 기업조세 부담, 기업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가운데 기업조세 부담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5%)된 것으로 평가됨

2

독일 투자입지 여건

가. 투자진출 계획수립

□ 목적과 진출전략 수립

-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우리나라의 FEZ(경제자유구역청)이나 FTZ(자유무역지구)에 해당 하는 국가차원의 특별 경제구역은 없음. 투자정책은 각 지역이나 산업별로 구분되며, 기업의 진출방식이나 분야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관할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분석한 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정보수집용 연락사무소 설치, 판매유통, 생산, 연구개발 등 투자 목적에 맞게 적합한 지역과 투자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

□ 지역별 지원정책 및 혜택 조사

- 독일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방정부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범위가 다르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함. 이와 관련, 독일 투자청(Gemany Trade & Invest)나, 각 지방 정부의 투자유치 기관을 접촉하면 무료



투자컨설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센안할트주 등의 일부 지방정부는 무료 Hot-line까지 마련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음

나. 舊동독 투자

□ 특징 및 지원제도

- 舊동독의 개발을 위해 독일정부는 투자시 국내기업과 외국간에 차별을 두지 않음
- '06.7.21~'09.12.31간 시행된 투자 인센티브법(InvZulG 2007)에 이어 '10년 1.1일 이후 개정된 투자인센티브법(InvZulG 2010)이 적용되며, 향후 '14년 까지 단계별로 인센티브가 적용됨
- 주요 수혜 대상기업은 가공업, 제조업(일부), 숙박업 등이며, 대상지역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으로 이는 舊동독 지역에 해당
- 현재까지 상기 지역에 투자한 기업의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광학, 바이오 기술, 화학, 전자, 나노, 항공우주 기술, 자동차 등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연구개발센터가 주를 이루며, 신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산업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

□ 투자시 유의사항

- 통독 이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舊동독 지방정부간의 고도 기술기업 투자유치의 성과로 舊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 지역에는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현재 투자진출이 예전보다 활기를 띠고 있음

- 이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 및 나노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미래산업의 투자입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舊동독은 舊서독 대비 인건비가 낮고, 역동적이며,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청년 노동인력 서독 유출로 인해 전문인력 고용면에서 입지가 좁은 편
- 또한 타지역에 비해 외국인 차별이 심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신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사업이 꾸준히 전개되는 등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오는 '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BBI)은 대 아시아권 주요 국가 비행시간 단축 등으로 동 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 상승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향후 舊동독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일정부의 무역 및 투자기관인 'Germany Trade & Invest'와 작센-안할트州的 투자유치 기관인 'Sachsen-Anhalt mbH(IMG)' 등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성·인프라·연계 산업 밀집도·투자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 지역별 투자 여건

□ 바덴-뷔르템베르크

- 면 적: 35,751km²
- 인 구: 1,075만 4,865명(외국인 117만 964명/10.9%)



- 주 도: 슈투트가르트
- 주요 기관: 연방 대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칼스루에 소재)
- 주요 산업: 자동차, 마이크로 칩(Benz, Bosch, IBM), 정유산업(Karlsruhe), 인쇄기, (독일 연방주 중 최강의 경제 수준)
- 특이사항: 핵 연구센터(칼스루에), 암연구센터(하이델베르크), 및 9개의 종합 대학 소재

□ 바이에른

- 면 적: 70,550km²
- 인 구: 1,251만 명(외국인 108만 7,843명/ 8.7%)
- 주 도: 뮌헨
- 주요산업: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릉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국립공원), 자동차/항공기 제조, 전기/전자, 보험, 출판, 기계제조, 완구(뉘른베르크), 섬유, 농업, 양조(맥주)
- 외국 기업: Denso(일본), Lear(미국), Johnson Controls(미국), Faurecia(프랑스)
- 특이사항: 독일 최대 면적,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다수,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Oktoberfest” 개최(뮌헨)

□ 베를린

- 면 적: 892km²
- 인 구: 344 만 3,000명(외국인 46만 2,078명/13.4%)
- 주 도: 베를린

- 주요 기관: 연방하원 및 정부
- 주요 산업: 기계제조, 식품/주류, 제약, 섬유
- 특이사항
 - 극장과 박물관, 마이트너 원자물리학 연구소, 헤르츠 통신기술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재
 - 쇼핑의 중심: 독일에서는 드물게 평일은 제한없이, 일요일은 13:00-20:00 까지 쇼핑가능

□ 브란덴부르크

- 면 적: 29,482km²
- 인 구: 251 만 2,000명(외국인 4만 7,364 명/1.9%)
- 주 도: 포츠담
- 주요 산업: 농업, 강철, 갈탄, 기계, 자동차(벤츠 화물차 조립공장), 전자, 서비스
- 외국기업: UHY Deutschland AG(회계법인, 영국), Rolls Royce(영국), ebay (미국)
- 특이사항
 -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주로 생산하였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모
 - 특히 금융업과 관련 서비스 산업이 매년 높은 성장세

□ 브레멘

- 면 적: 404km²



- 인 구: 66만 2,000명(외국인 7만 6,556명/11.6%)
- 주 도: 브레멘
- 주요산업: 해상교통 및 조선, 항공/우주, 자동차, 커피
- 외국기업: 에어버스, Maersk Logistics 등 국제 물류기업
- 특이사항
 - 2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면에서 독일 최소
 - 지역 GDP의 1/3 이 해상운송과 대외교역으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물류가 발달

□ 함부르크

- 면 적: 755km²
- 인 구: 177만 4,000명(외국인 23만 545명/13.0%)
- 주요기관: 세계 각국의 영사관이 최다 소재
- 주요산업: 무역 및 교통, 조선소, 정유소, 항공/우주, 전자, 정밀산업, 화학
- 외국기업: Shell, BP 등
- 특이사항
 -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및 금융 중심의 도시
 - 유럽 2 위, 세계 7 위의 컨테이너 항구 보유. 중/북유럽의 물류 중심지

□ 헤센

- 면 적: 21,115km²
- 인 구: 607만 1,000명(외국인 72만 3,086명/11.9%)
- 주 도: 비스바덴
- 주요기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크푸르트), 독일중앙은행 (프랑크푸르트)
- 주요산업: 금융, 박람회, 기계, 철도(기관차 및 객차 제조), 자동차(Opel), 가죽, 광학
- 외국기업: Canon, 펩시, Honeywell, 모토롤라, Proctor & Gamble, Adam Opel AG, 삼성
- 특이사항
 - 유럽 화물 1위, 여객 2위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소재
 - 고전주의 문학의 거성 괴테의 탄생지(프랑크푸르트) 소재
 - 독일의 FDI 유입액의 약25%를 차지

□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 면 적: 23,189km²
- 인 구: 165만 1,000명(외국인 3만 68명/1.8%)
- 주 도: 슈베린
- 주요 산업: 농업, 목축업, 관광업
- 외국 기업: Sakthi Group (인도)
- 특이사항: 1,000개의 호수 소재

□ 니더작센

- 면 적: 47,635km²
- 인 구: 792만 9,000명(외국인 45만 8,153명/5.8%)
- 주 도: 하노버
- 주요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산업: 식품(베이컨, 꿀), 광업(철광석, 천연가스), 박람회, 자동차(Volkswagen)
- 외국기업: GE Money Service(미국), Nedexco(네덜란드), Tulip Danish Crown (덴마크)
- 특이사항: 세계최대 규모의 하노버 전시장 소재, 전시산업 발달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면 적: 34,082km²
- 인 구: 1,787만 3,000명(외국인 179만 4,549명/10.0%)
- 수 도: 뒤셀도르프
- 주요산업: 에너지(31개 발전소 소재), 부품소재, 양조, 광업, 철강, 화학, 섬유 등
- 외국기업: 포트, ZTE (일본), UPS (미국)
- 특이사항: 연방주 중 최다인구 보유, 유럽 최대의 인구 밀집지역

□ 라인란트-팔츠

- 면 적: 19,847km²
- 인 구: 401만 3,000명(외국인 28만 9,023명/7.2%)

- 수 도: 마인츠
- 주요산업: 화학/제약(BASF), 주류(포도주), 자동차 부품
- 외국기업: DaimlerChrysler, 오펔
- 특이사항: 구텐베르크 인쇄박물관 소재

□ 자르란트

- 면 적: 2,568km²
- 인 구: 102만 3,000명(외국인 7만 7,710명/7.6%)
- 주 도: 자르브뤽켄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유리 및 도자기 제조, 기계, 금속가공업
- 외국기업: 포트, Terex(미국), Amer Sports(핀란드)
- 특이사항: 다수의 종합대학 집중, 심포지엄의 도시

□ 작센

- 면 적: 18,413km²
- 인 구: 416만 9,000명(외국인 8만 6,145명/2.1%)
- 주 도: 드레스덴
- 주요산업: 박람회, 도자기, 전자, 자동차(폭스바겐), 출판(라이프치히)
- 외국기업: AMD(미국), Amazon(미국), Shell Solar(네덜란드), Hitachi Automotive Systems Europe(일본), Transcom(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이탈리아), Wicor Holding(스위스)



- 특이사항: 舊동독 지역이면서도 외자유치가 활발하고 산업이 발달

□ 작센-안할트

- 면 적: 20,446km²
- 인 구: 235만 6,000명(외국인 4만 4,621명/1.9%)
- 주 도: 막테부르크
- 주요산업: 농업(밀, 사탕무, 채소), 화학, 생명공학
- 외국기업: Solvay Chemicals(벨기에), Polytec Plastics(호주), Roba Corrugated (스위스), Coil Aluminium(벨기에)
- 특이사항: 바로크 음악의 거성 헨델의 출생지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면 적: 15,761km²
- 인 구: 283만 2,000명(외국인 13만 2,673명/4.7%)
- 주 도: 키일
- 주요산업: 관광업, 농업, 해운
- 외국기업: Sysmex Corporation (일본), Vishay (미국)

□ 튀링엔

- 면 적: 16,171km²
- 인 구: 225만 명(외국인 3만 5,220명/1.6%)

- 수 도: 에어푸르트
- 주요산업: 공작기계, 광학(Zeiss), 전기/전자(Bosch), 농업(보리, 밀, 감자, 사탕무, 과일), 유리
- 외국기업: Sandoz(스위스), BorgWarner Transmission (미국),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 Group Corporation(중국), TNT(네덜란드)
- 특이사항: 녹지가 밀집되어 있어 “독일의 녹색심장(German Green heartland)”로 불림

3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구분

- 독일의 기업 형태는 크게 자본회사와 인적회사로 나뉘는데, 자본회사는 AG(주식회사) 및 GmbH(유한회사), 주식합자회사(KGaA), 유럽회사(SE) 등으로 구분되며, 인적 회사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회사(KG)와 합명회사(OHG), 자본 인적회사 (GmbH & Co. KG), 조합(GbR), 개인사업자 등이 속함
- 이 외에도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설립절차가 간소한 영국의 법인 형태인 Ltd.를 독일 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독일 유한회사(GmbH)와 동등한 법적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됨
- 이는 독일 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법인 설립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나, 은행 대출을 희망하는 독일기업에게는 대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음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 독일 대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1인(소규모 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함
- 법정 최소 자본금은 5만 유로이며,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다. 자본금은 현금 내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경우, 총 자본금의 15%만 예치하면 됨
- 주식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함
-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의사표시는 유한회사에 비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짐
- 주식회사 설립 신고 서류 중,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주식 발행 종류(무기명 주식 또는 기명 주식), 이사회 감사의 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됨
-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제시해야 함
- 1주의 최소 금액은 1 유로 이며,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1 주 금액의 자본금이다. 부분주의 경우, 배급 금액과 총 수를 기재하며, 주식의 종류가 여럿일 경우 주식의 종류를 기재함. 또한 추후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주식회사의 커다란 장점은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 그 때문에 지분의 이전 및 주식 양도가 용이하다. 이 밖에도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음

□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 독일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서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의 전체 물적회사 가운데 약 90%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5%만 예치하면 됨
- GmbH의 출자사원은 자기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나, 주주에 의한 보증이나 차입 등에는 무한 책임을 짐
-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함
-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립 시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원(Amtsgericht)에 등록 의무가 있음
- 또한 지분의 이전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공증인에 의한 절차가 필요함
-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함
- 또한 지난 '08 년 11.1 이후 영국의 유한회사(Ltd.)와 유사한 설립 자본금 1유로의 미니 유한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짐

- 단, 자본금이 25,000유로가 될 때까지 연 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회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한회사(GmbH)로 법인 변경이 가능함

□ 유럽회사(SE)

- 유럽회사(라틴어: Societas Europaea, 약칭 SE)는 유럽연합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이다. 유럽연합은 '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함
- 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을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음
- 또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 가능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 법인형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이며, 유럽 전역에 걸쳐 활동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만이 법 형식을 유럽 회사로 전환함

□ 합자회사(KG)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 무한책임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주어짐
- 한국에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 책임 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 책임사원)형태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함

□ 합명회사(OHG)

- 합명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임
-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됨

□ 조합(GbR)

-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하여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의 사업자본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는 법 형식임
- 조합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 활동을 하는 조합은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음
- 조합은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함

□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n 또는 Einzelfirma)

-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최소 자본금이 필요 없고, 해당 사업자가 관할 사업자 등록청에 영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설립 가능하므로 매우 간단함
- 만일 개인사업자가 상인인 경우에는 상사등기부에 등록을 해야 하나, 판매 및 기타 거래 활동의 내용이 복잡한 회계장부의 작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영업에 해당하므로 상사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

나. 투자형태별

□ 현지 법인

- 상기 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함
- 해외 기업이 자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독일 규정이 적용됨

□ 지사

- 독일 지사는 크게 독립지사(Zweigniederlassung), 비 독립 사업장(Betriebsstaette) 및 연락사무소 등 3가지로 나뉘며,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의 경우, 독일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님
- 독립지사의 경우 상업 등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지점이라 통칭된다. 비 독립사업장의 경우, 등기가 불필요하므로 비 등기지점이라 불리며, 관할 시청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함
- 독립지사는 법적으로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외국기업의 지사인 경우,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됨
- 따라서 외국기업의 등기지사는 관할지역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독일 주재 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독일에 설립된 외국 모기업의 등기지사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함. 반면 비 등기지점의 경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함

- 독립지사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 독립 사업장의 경우,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본사 이름으로 발행 가능함
- 지사는 독일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독일 회계원칙에 따른 기장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으며, 설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
- 지사는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이외에 별도의 경영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노동자 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해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하거나 직원들에게 경영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 지사의 경우, 본사가 지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국기업이 지사설립보다는 법인설립을 선호하고 있음

□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설립은 한국 모기업이 독일에 사무소 하나만을 개소하는 경우를 말함
- 대표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인보이스를 발급할 수도 없음
- 대표사무소의 과제는 시장 조사, 고객과의 접촉, 애프터 서비스 또는 연구 개발에 한정됨. 따라서 대표사무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계장부 기장의 의무는 없음

다. 투자 주체별

- 투자 주체 별로 크게 단독투자 외에도 특수 형태인 합작투자, 기업의 인수 합병, 익명조합(Stille Gesellschaft) 및 유럽 경제이해연합(EWIV)로 나뉜다.

□ 단독투자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의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 가능하며,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합작투자

- 합작투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리된 기업의 자회사를 의미함
- 독일의 경우,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와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합작 기업 역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기업 설립이 가능함
- 합작기업은 언제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설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음부터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및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인수합병(M&A)

-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대안으로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매입하고, 일정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인수합병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정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위험요소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 기업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기업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통한 방식인 자산인수(Asset Deal)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지분의 취득을 통한 방식인 지분인수(Share Deal)임
- 자산인수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재화나 영업상의 보호권 또는 기업의 일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고려해 볼만함
- 지분인수의 경우에는 회사의 전 재산 및 부채까지 함께 인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상세한 실사보고가 필요함
-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외 독일의 엄격한 노동 법규 등 기업 인수 후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장애요소로 인해 독일 진출 대다수 한국기업들은 인수 합병의 경우 모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선호함

□ 익명조합 (Stille Gesellschaft)

- 익명조합은 특수 형태로, 인적회사에 속하나 유통기업은 아니다. 기업 설립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다른 유통 기업에 재산 출자를 할 경우에 생성됨
- 이 경우 별도의 협약 없이,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법적인 내용에 따라 기업관계라기 보다는 채무 관계의 성격을 띠

□ 유럽 경제 이해 연합

- 유럽 경제 이해 연합은 유럽 법에 근간한 공동 기업의 형태로 최소 2인의 참가자가 함께 해야 하며, 회원 중 최소 2명을 양 회원국의 본사소재지 및 본사 행정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유럽경제 이해 연합은 경제적 목적을 따라서는 안 되며, 회원국의 경제적 목적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 있음
- 유럽 경제 이해연합의 정관은 별도의 형식 없이도 유효하나 독일에서는 사업자 등록신고(영업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설립 시 사업자 등록 관련 진술에 필요한 내용이 문서 형식으로 요구됨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 선호형태 및 사유

- 독일 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유한회사(GmbH)임
- 유한회사는 실제로 독일 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며,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의 약 95% 이상이 유한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 분산 및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관련 법규의 규제 및 감독과 정보 공시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따라서 법인 설립의 목적이 순수한 영업을 통한 본국의 배당이 목적인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선호되고 있음
- 다만 사전에 독일에서 유한회사를 한국 모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대표사무소는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립이 매우 간단함
- 대부분의 경우 대표사무소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시의 영업등록신고만 마치면 되는데, 등록신고를 위해서는 대표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증거서류만으로 충분함

-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일단 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사무소는 납세주체가 아니며(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영업거래의 계약주체가 될 수도 없으므로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 적합한 형태임. 다만 대표사무소에는 본사를 대리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외국인에게 어려운 형태

- 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과 지점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며, 이는 본사의 글로벌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 다만 법인의 경우, 지사(지점)의 형태에 비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 제 삼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함
- 또한 법인의 경우, 지점에 비해 조세당국과의 마찰이 적고 본지사간의 계약에 의해 어느 정도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지사설립 및 지사의 상업등기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독일에 설립될 지사가 한국 대형기업의 지사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등기부상 내용을 모두 독일어로 번역해야 함. 더욱이 한국본사의 전체 이사들이 독일 지사설립 신고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도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 함.
- 이는 본사의 상업등기부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이에 따라 법인설립에 비해 많은 서류의 작성과 모든 임원진의 서명공증이라는 비효율적인 절차가 요구되므로 적지 않은 부가적으로 발생함



-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소수의 한국기업만이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사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는 달리 책임부담의 위험이 자본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사설립의 빈도가 낮은 이유임

라. 추천 법무법인 및 회계 법인

- EUKO Consulting GmbH
 - 주소: Trakehner Str. 7~9, 60487 Frankfurt/M.
 - 전화번호: +49-(0)69-977879-0
 - 홈페이지: <http://www.eukogroup.de/>
 - 이메일: an@eukogroup.de, cho@eukogroup.de
 - 취급분야: 회계감사/세무자문/법률자문/프로젝트 개발 및 M&A 등 기업 컨설팅
 - 규모 정보: 총 직원 17명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안병주 An, Byung-Joo, 조은영 Cho, Eun-Young 등)
- Anwaltskanzlei Ha
 - 주소: Mergenthaler Allee 79~81, 65760 Eschborn
 - 전화번호: +49-(0)6196-523640
 - 홈페이지: 無
 - 이메일: info@ra-ha.de
 - 취급분야: 법률 컨설팅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하록원(Ha, Rok-Won) 변호사)

○ Ernst & Young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mbH

- 주소: Mergenthaler Allee 3~5, 65760 Eschborn
- 전화번호: +49-(0)6196-9962-6565
- 홈페이지: <http://www.ey.com/>
- 이메일: kwang.t.kim@de.ey.com
- 취급분야: 각종 세무/ 회계 및 기업인수 합병관련 자문, 기업 회계감사
- 규모 정보: Ernst & Young 한국부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김광태 Kim, Kwang-Tae)

○ KPMG AG

- 주소: Marie-Curie-Str. 30, 60439 Frankfurt/M.
- 전화번호: +49-(0)69-9587-2641
- 홈페이지: <http://www.kpmg.de/en/index.html>
- 이메일: sbohnhardt@kpmg.com
- 취급분야: 세무, 감사, 컨설팅
- 규모 정보: KPMG 컨설팅 한국부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조성진 Cho, Seong-Jin, 이세연 Bohnhardt, Se-Yun)

○ Pricewaterhouse Coopers AG(PWC)

- 주소: Marie-Curie-Str. 24~28, 60439 Frankfurt/M.
- 전화번호: +49-(0)69-9585-6610
- 홈페이지: <http://www.pwc.de/en>
- 이메일: kwang-soo.x.kim@de.pwc.com



- 취급분야: 세무, 감사, 컨설팅
- 규모 정보: PwC 회계법인 한국부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우승백 Woo, Seung-Back)

4 독일의 주요투자법

가. 독일의 주요투자유치 시스템

□ 투자유치 정책 및 전망

- 독일 정부는 궁극적인 투자 유치 목표인 “Economic and Technological Centre”로서의 독일의 입지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허브형” 투자유치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음
- 독일은 이와 함께 “EU 내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개발 및 경제입지 강화”를 위해 낙후 지역인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지역개발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에서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독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외국인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독일의 투자 유치 시스템은 '09.1월 새로 통합 발족된 Germany Trade and Invest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 유치활동의 두 가지로 나뉘며,

독일 연방 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개발 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던 투자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03년 우리나라 Invest KOREA에 해당하는 투자진흥기관 (IPA)인 Invest in Germany를 설립함

-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Invest in Germany는 '09.1.1 연방수출경제청과 통합되어 Germany Trade and Invest로 재탄생

□ 독일 투자청(GTAI: Germany Trade and Invest)

- GTAI는 '09.1.1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Invest in Germany GmbH”와 독일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했던 수출경제청(BFAI: Bundesagentur fuer Aussenwirtschaft)의 합병으로 신설된 무역투자 진흥기관으로, 독일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전반을 통합. 조정하는 임무와 함께 독일의 경제, 투자, 기술입지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정부/지자체

- 독일의 주정부나 개별 지자체 또한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경제개발 공사나 투자진흥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 기본적으로 투자수요가 접수될 경우, Germany Trade and Invest는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하고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에 따라 독일의 투자 유치 활동은 Germany Trade & Invest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GTAI는 세계 80여 개국에 약120여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해외 상공 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잠재투자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함

- 그 외에도 지방 경제개발 공사는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함

나. 투자 사전승인 제도

외국인 투자관련, 독일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투자제한 분야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원칙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나, 외국기업 투자시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독과점
 - 외국기업이 독일기업을 인수 투자를 희망시 시장독점을 막기 위하여 전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Bundeskartellamt(연방 카르텔청)의 사전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 특수업종: 도박, 환경오염, 국방 등
 -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 금융, 환경 등 특수분야 투자시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대외경제법(AWV) 개정을 통한 투자제한
 - 비 EU 및 EFTA 국가로부터의 투자에 있어서 독일의 공공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경우에는 연방경제기술부의 허가가 필요함. 이는 해외 국가 펀드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독일 경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 외국인 투자 감독기관
 - 독일에서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감독기관은 없음. 독일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관청의 사업자 등록청(Gewerbeamt)에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됨

다. 투자 인센티브

- 근본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우대 제도는 없으나 독일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위해 '08년 1.1일부터 법인세를 기존의 과세대상 수입의 25%에서 15%로 인하하였음
- 또한 총 자본금의 15%에 이르는 현금만 예치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투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이 외, 영업세 기본세율 역시 5%에서 3.5%로 낮추어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30% 이하로 경감됨
- 독일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패키지를 운영 중이며, 투자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크게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과제(이하 GA/GRW)와 특별 투자촉진 프로그램인 투자인센티브법에 의거한 조세지원의 두가지로 구분됨
 - GA 프로그램은 동서독 관계 없이 EU 기준에 준하여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현금지원 제도로 전체 독일을 인구 및 개발 발전 상태에 따라 A, A1(Region in Transition), C, D, C/D의 5개구역으로 분류하고, 중,소,대 기업 별로 차등 지원함
 - 투자인센티브법 (InvZulG)에 의한 투자지원은 구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투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대상은 주로 가공업, R&D, 일부 제조와 서비스업, 숙박업 부문의 소득세, 법인세 과세의무를 지는 기업임
- 독일 정부는 '08.12.11일 기존의 독일 투자인센티브법(InvZulG 2010)을 개정하여, '10년 1.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투자인센티브법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투자비용 산정 기본요율을 차등 적용함



제 4 장 독일 진출의 애로사항

1. 독일 진출시 애로사항
2. 독일의 상관습과 거래시 유의사항
3. 초기 진출시 각종 신고절차
4. 독일 유관기관 웹사이트

1

독일 진출시 애로사항

가. 독일진출시 애로사항

□ 한국기업 애로 사항

-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임. 이는 기업의 경영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성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한국 M&A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사정에 미숙하고, 한국 중심의 회사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진출 초기에 한국형 중심의 회사운영 방식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지화를 이행하는 것이 투자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음
- 독일의 근로자 중심의 노동법 또한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예컨대, 독일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4대 보험 등 챙겨야 할 복지 의무가 많음. 아울러 독일에서는 병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 병가인 경우 발병 후 첫 6주간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한국으로의 송금 시 금융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음. 체계적 송금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독일과 한국 본사 간의 대금전달에 비용 부담이 있음. 독일 내 한국의 은행들이 진출해 있으나, 이들의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독일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점으로 꼽힘

- 독일은 현재 EU 가입국으로 EU에서 결정한 각종 규제들이 독일에서도 유효하나, 이러한 규제의 발효 시기와 시행 방법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국 별로 다르거나 통일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 독일에 관한 사항은 따로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는 점도 번거로운 점으로 꼽힘
- '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무관세 적용으로 한국의 대 독일 수출에서 높은 관세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11년 12월 19개국 380여 개 EU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22%가 한-EU FTA 협정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독일 바이어의 경우, 수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 기업의 대 독일 및 유럽 수출 시 실질적인 관세효과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나. 구체적 무역 장벽 사례

□ 강제인증(CE, TUEV)

- 독일은 수입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 제도는 없음. 다만 유럽 연합 지침의 안전 규정(EU Directives) CE 마크 획득이 의무인 품목이 있으며, 동 검사 및 시험은 독일 뿐 아니라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www.ktr.or.kr
 - 국내 유일한 국제전기위원회(IECEE)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CBTL)임.
 - 현재 52개 회원국에 293 여 개의 인증시험기관이 있음(www.iecee.org)
 - Tel: 02-2164-0011 / Fax: 02-2634-1008

○ 한국표준인증원(KSC)

- 홈페이지: www.isoiso.or.kr
- CE 외에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인증도 하고 있음.
- Tel: 02-785-1697 / Fax: 02-785-6064

○ TÜV 라인란드 그룹

- 홈페이지: www.kor.tuv.com
-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872년에 창립되어 약 14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증 서비스 기업임. 전 세계 61개국 490개 지사에 13,85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37개의 산업분야에서 2,500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Tel: 02-860-9874 / Fax: 02-860-9871

○ CE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기본규격(EN규격)을 분석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보완을 거쳐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CE 인증이 유럽연합 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증제도이긴 하나, 각국의 제품 안전마크를 대신 하지는 않음

○ EU지침의 안전규정에 따라 독일 내에서도 소비자용품 안전법(GSG) 충족 기준이 있어, 동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품목에 따라 TUEV 인증 및 GS 마크를 받을 수 있음. 복잡한 기기 일수록 인증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의 관련 제품 수출에 애로사항 발생. 특히 전자기기, 안전 관련 장치 관련 수출업체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음

□ 비자 연장

- 현지 시장 파악 및 고객 확보를 목표로 일차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게 되며, 시장 동향을 파악 후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법인 전환이 가능한 기반이 갖추어지는데는 통상 4-5년이 소요됨. 현재 일부 주정부에서는 연락사무소 파견 직원에 대하여 통상 1번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3년이 넘을 경우 법인 전환을 중용하기도 함

2

독일의 상관습과 거래시 유의사항

가. 일반유의 사항

- 독일 바이어와의 약속은 반드시 최소 4주에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상담 시간을 잡기도 하나, 메일의 경우는 스팸으로 처리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함
-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뿐만 아니라 사적인 약속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임.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인 회사인 경우 대체로 안내 데스크에 등록을 해야 담당자와의 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 15분전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음. 소규모의 업체일 경우에는 약속시간보다 몇 분 전에 도착해서 밖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정시에 들어가는 것이 좋음
- 공식적인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인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악수(손을 잠시 잡고 순간 몇 초 짝 누른다)를 함. 악수를 할 때 시선은 땅바닥에 두지 않고, 상대방 눈동자를 쳐다봄. 독일에서는 호칭시 친구 사이가 아닐 경우

결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됨. 독일 바이어의 성 앞에 Herr 또는 Frau(Mr./Ms.)를 붙이는 것이 예의이며,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Dr. Meier. 또는 Herr/Frau Prof. Dr. Meier 등으로 직함을 꼭 넣어주도록 함

- 공식적인 미팅에서 정장은 특히 초면이나 계약 작성시에 필요함.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평상복 차림도 상관없으며, 공장 방문일정이 있거나 전문 사무직이 아닌 공장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정장차림보다는 노타이 등 세미 정장이 더 적합함
- 독일은 역사적으로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경험한 나라로 독일 바이어와 미팅 시 “나치” 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음. 바이어와의 친분이 쌓여 자연스럽게 역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히틀러” 또는 “유대인 학살 (Holocaust)” 관련 농담이나 찬사는 금물임. 문화적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질문은 금물
- 독일인들은 철저히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분위기의 비즈니스 상담 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농담은 하지 않도록 주의
- 독일의 상거래 문화는 매우 보수적이고 느린 점을 이해하고 단기간에 승부를 본다는 마음 보다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함

나. 독일의 비즈니스 특징

□ 독일 바이어의 특징

- 독일 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 거래선 발굴이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트이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독일 업체의 보수적인 성향의 또 다른 특징은 거의 모든 거래를 문서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임
-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독일인들은 특히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여 가능하면 낮은 가격의 좋은 제품을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함.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요인 또한 중요시하지만, 독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높은 질과 함께 저렴한 가격 제시가 가장 중요함
- 신제품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제품은 독일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반드시 갖추며 거래 시 저렴한 가격으로 오퍼하는 것이 중요함
- 독일인들은 엄격한 계획성과 합리적 사고 방식이 생활 습관으로 배어 있어 충동 구매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첫 구매 상담 시 바로 계약이 성사되기 힘들며,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독일 업체들과 접촉 시 우선통화 없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업체 이메일로 연락할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담당자와 통화 후, 담당자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야 다음에 있을 상담과 계약에 유리함

□ 바이어 상담시 고려사항

- 독일 바이어와의 첫 대면에서 Small Talk는 간단히 마치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독일인들은 Small Talk를 통한 친근감보다 전문 가적 능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
- 독일인들은 구매 상담 시 사전에 상대 업체의 기본 정보 및 상품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한국 업체 측에서는 회사 및 상품 소개 같은 간단한 정보부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독일인들은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붙여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과 독일의 제품정보에 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관련제품 판매업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계약 체결 시 유의점

-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대금결제 방법과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함. 예를 들어, 수출대금 결제조건이 DDP(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 의무가 있어서 수출자가 관세, 현지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됨. 하지만 부가가치세('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 후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약서(Sales agreement)상에 부가가치세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함. 수출 보험공사(<http://www.keic.or.kr>)가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제도' 등을 활용,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음
-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함. 중재지역은 협상력의 우위에 따라 수입자는 대부분 자국을 선호하나 제3국으로 중재지를 지정할 수도 있음. 자세한 관련내용은 대한상사주재원 홈페이지에서 입수 가능

3

첫 진출시 각종 신고절차

가. 일반유의 사항

□ 거주 등록

○ 거주 신고(Anmeldung)

- 주거지가 정해지면 주재원 및 가족은 관할 외국인 관청에 소정 양식에 따라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함. 이 거주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 관계(기혼 여부), 종교 관계, 취업 여부 등 전반적인 인적 사항을 기록함. 이 신고서는 각 1부가 외국인청, 노동부 등 상급 관청에 송부되며, 독일생활 중 이 기록에 의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 행사를 하게 됨으로 기록에 신중을 요함
- 특히 종교란에 종교(기독교, 가톨릭)가 있는 것으로 기입하면 소득의 2% 정도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됨. 거주 신고는 거주 관할시청이 담당

○ 체류 허가 및 노동 허가(Aufenthaltserlaubnis & Arbeitsgenehmigung)

- 3개월 이내 체류인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함. 따라서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취득하는 경우와 독일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의 주재원의 경우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가 발급되면,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를 발급함. 체류비자는 통상 2개월 이내에 발급되나 간혹 발급이 지연되어 임시비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음

- 비자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는 27개 항목으로 체류 예정기간, 체류지, 업무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 노동청에서는 노동허가 신청시 계약기간이 말소될 때까지 노동허가를 발급하며, 이후 갱신신청시 2년 또는 3년 기간의 노동허가를 발급함. 또한 독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됨
 - 일부제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의 경우 독일에서 3개월 거주 후 타 유럽 국가로 출국 하였다가 입국하면 3개월을 다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쉥겐협정에 의해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로 출국하더라도 불가능한 방법임. 여행자 비자(정확히는 무비자) 로 3개월을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거주 후 다시 독일로 입국하여야만 함
- 세금카드(Lohnsteuerkarte)
- 독일의 모든 직장인은 거주지 관할 시청으로부터 세금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세금카드에 의하여 회사는 매월 직원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게 됨. 관할 시청은 매 연말경에 차년도 세금 카드를 집주소로 우송해 주는데 행정적인 사유로 송부가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Einwohnermeldeamt(=Bürgeramt: 동사무소)나 Finanzamt (세무서)에 가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전화
- 전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거주 지역의 전화국에 제출해야 함. 사용자의 대부분은 Deutsche Telekom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통신시장 개방으로 인해 전화 비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통신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음

- 다만 일부 저가통신의 경우 자사의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고, 국제 할인 회선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전화번호는 새 번호를 신청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음. 전화 가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마다, 개개인 별로 상이하여 짧게는 1~2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바로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 인터넷

- 인터넷의 경우, 집에 연결된 선이 일반 전화선인지 고속 인터넷 선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설치시간 및 사양이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설치하는 전화 설치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임. 2주에서 1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개설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요즘에는 전화와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전화 및 인터넷 설치시 한국과 달리 통신 회사 직원이 방문 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일자 만을 통보한 후 방문하는 등 설치시 불편한 점이 다수 존재함

○ 무선전화

- 무선전화의 경우에는 Deutsch Telekom계열의 T-Mobile을 비롯하여 Vodafone, e-Plus, O2 등이 있고, 의무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Payphone과 같이 사전에 금액을 적립한 후 적립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다만, 연관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가능함.

○ 자동차 구입

- 신차의 경우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BENZ, BMW 같은 독일차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한국 차량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함.
- 중고차는 개인간 직거래 또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음. 직거래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향후 고장이나 문제 발생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용할 경우 1년 또는 2년의 개런티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향후 A/S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방문전 www.adac.de 또는 www.autosout24.de와 같은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음

○ 운전면허 취득

-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독일에서 운전이 가능하나, 1년이상 거주시에는 독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주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함. 지역에 따라 절차와 요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임.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 면허 학원수강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비용은 한국에 비해 3~4배 정도 비싼 편

○ 은행 구좌 개설

- 여권과 거주 등록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구좌 개설시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도 가능함
- 독일은 한국과 달리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곳이 많아 구좌 개설시 EC카드 (직불 카드)를 같이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함. 또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회사나 집 주변의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하면 유리함.

○ 의료보험

- 의료보험은 크게 특정 근로자가 의료 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험과 법적의무 가입자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사보험이 있음. 공보험의 경우, AOK, Barmer Ersatzkasse, Bundesknappschaft, IKK, KKH 등이 있으며, '09년 이전에는 가격차이가 있었으나, '09.7월 이후 의료보험 기본 산정률이 소득의 14.9%로 통일되었으나, '11년 1월 이후 소득의 15.5%로 상향 조정되었음. 또한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 및 연금수령자의 경우, 총 소득의 8.2%, 고용주의 경우 7.3%로 차등을 둠
- 사보험의 경우, Gerling, Gothar, Inter, HUK Coburg 등이 대표적이며, 보험사마다 가격 차이가 많으므로 가입 전에 가격과 서비스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사보험의 경우 '11년 1월부터 유로 의료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이 3,750유로에서 3,712.50유로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11년부터(세금포함) 연소득 49,500유로(월 4,125유로)부터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함

4 독일 유관기관 웹사이트

□ 전시회

- AUMA (독일전시협회): <http://www.auma.de/>
 - 박람회장, 전시장치업체, 전시대행업체에 관한 정보 등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및 세계 주요박람회에 관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음

□ 경제전반

- BMWI(독일연방경제기술부): <http://www.bmwi.de/>
 - 독일 경제정책, 기업, 에너지 정책, 통신, 교역,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영어 및 독일어 모두 검색 가능함
- BMU(독일연방환경부): <http://www.bmu.de/>
 - 독일 환경정책,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어 및 독일어 모두 검색 가능함
- Germany Trade and Invest(독일무역투자청): <http://www.gtai.de/>
 - KOTRA 와 유사기관으로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투자정보, 개발계획, 상거래 관습 등 수출 지원 파트와, 외국인 투자 지원을 하는 투자파트로 구분
- IHK(독일상공회의소): <http://www.diht.de/>
 - 독일연방 상공회의소로서 82 개의 지방상공회의소의 중앙기관이다. 경기, 유로화, 교역, 회사, 세무 및 재무, 세계각국 박람회, 수출지원제도, 국제적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입수할 수 있음
- IFO 경제연구소: <http://www.ifo.de/>
 - 경제연구소인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의 웹사이트로서 경기동향, 주요 경제이슈 등 동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주간 및 월간 각종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업경영관련 공시 사이트: <http://www.bundesanzeiger.de/>
 - 공시가 의무화된 법인들의 각종 연차보고서 등 경영실적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노동

○ DGB(독일노동조합): <http://www.dgb.de/>

- 독일 내 각 노조 연합체 웹사이트로서 근로자의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BDA(독일연방고용주협회): <http://www.bda-online.de/>

- 노동법, 임금,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회사 연금법, 인사정책, 직장 내 교육, EU 의 사회 보장법 등 고용주의 근로자 정책을 위 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금융

○ Bundesbank(독일연방은행): <http://www.bundesbank.de/>

- 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유로화에 관한 정보, 주요경제지표 및 통계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참고 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홈페이지 정보센터(www.kotra.or.kr)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김유찬,이유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국세행정포럼, 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논의, 국세지 2012.7월
- Ax/Grosse/Caemmerer, AO und FGO, 14te Aufl., Stuttgart, 1995.
- Ax/Grosse/Melchoir, AO und FGO, 19te Aufl., Stuttgart, 2007.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bericht 2003, Bonn, 2002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bericht 2009, Bonn, 2008.
- , Monatsbericht, November 2003, Bonn.
- , Monatsbericht, August 2008, Bonn.
- Bundjes/Geist, UStG, Kommentar, Verlag C.H.Beck, Muenchen, 2006.
-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c. 2001, Frankfurt.
-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c. 2005, Frankfurt.
-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Feb. 2009, Frankfurt.
- Hermann/Heuer/Raupach, Koerperschaftsteuer, Kommentar.
- KPMG, Verordnug zu Art, Inhalt und Umfang von Zeichnungen im Sinne des Artikel 90 Abs. 3 der Abgabenordnug, 28. Okt. 2003.
- Meincke, ErbStG, Kommentar, Verlag C.H.Beck, Muenchen, 2002.
- Schmidt, EStG, Kommentar, 16te Aufl., Verlag C.H.Beck, Muenchen, 1997.
- Schmidt, EStG, Kommentar, 25te Aufl., Verlag C.H.Beck, Muenchen, 2006.
- Steuerrecht I und II, 26te Aufl., Beck-Texte im dtv, Muenchen, 2008.
- Steuerrecht, 1ste Aufl., Beck-Texte im dtv, Muenchen, 2009.
- Tipke/Lang, Steuerrecht, 19te Aufl., Verlag Dr. Otto Schmidt, Koeln, 2008.
- Ulrich Niehus/Helmuth Wilke, Die Besteuerung der Personengesellschaften, 3 Aufl., Schaeffer/Poeschel, Stuttgart, 2005.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독일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독일 세법 등을 2012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독일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8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관 서 철 호

안 수 민

김 석 훈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0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